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정 1987. 11. 16.)
(개정 1988. 1. 28.)
(전면개정 1988. 8. 19.)
(개정 1989. 8. 28.)
(개정 1990. 6. 4.)
(개정 1990. 11. 23.)
(개정 1992. 5. 28.)
(개정 1992. 6. 5.)
(개정 1993. 3. 27.)
(개정 1995. 5. 22.)
(개정 1995. 9. 29.)
(개정 1996. 3. 29.)
(전면개정 1996. 6. 8.)
(개정 1996. 7. 10.)
(개정 1997. 9. 9.)
(개정 1997. 12. 16.)
(개정 1998. 3. 25.)
(전면개정 1999. 1. 19.)
(전면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3. 31.)
(개정 2000. 6. 21.)
(개정 2000. 9. 28.)
(개정 2001. 8. 6.)
(개정 2002. 3. 8.)
(개정 2002. 6. 7.)
(개정 2002. 6. 29.)
(개정 2002. 10. 4.)
(개정 2003. 1. 17.)
(개정 2003. 4. 12.)
(개정 2003. 6. 13.)
(개정 2003. 12. 3.)
(개정 2003. 12. 30.)
(개정 2004. 10. 1.)
(개정 2004. 11. 17.)
(개정 2005. 1. 5.)
(개정 2005. 5. 6.)
(개정 2005. 6. 30.)
(개정 2005. 7. 11.)
(개정 2005. 8. 18.)
(개정 2005. 12. 5.)
(개정 2006. 1. 17.)
(개정 2006. 4. 28. 규정 제186호)
(개정 2006. 6. 26. 직제규칙시행규정)
(개정 2006. 6. 29.)
(개정 2006.12. 28.)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1. 9.)
(개정 2007. 1. 30.)
(개정 2007. 3. 13.)
(개정 2007. 4. 5.)
(개정 2007. 5. 4.)
(개정 2007. 5. 23.)

(개정 2007. 6. 26.)
(개정 2007. 8. 31.)
(개정 2007. 9. 28.)
(개정 2007. 9. 28.)
(개정 2007. 10. 31.)
(개정 2008. 1. 14.)
(개정 2008. 2. 28.)
(개정 2008. 7. 2.)
(개정 2008. 12. 5.)
(개정 2008. 12. 30.)
(개정 2009. 6. 8.)
(개정 2009. 7. 13. 규정 제249호)
(개정 2009. 9. 29. 규정 제250호)
(개정 2009. 12. 3. 규정 제251호)
(개정 2010. 4. 16. 규정 제255호)
(개정 2010. 4. 30. 규정 제258호)
(개정 2010. 5. 19. 규정 제259호)
(개정 2010. 6. 24. 규정 제261호)
(개정 2010. 6. 29. 규정 제263호)
(개정 2011. 2. 28. 규정 제268호)
(개정 2011. 9. 30. 규정 제272호)
(개정 2011. 12. 28. 직제규칙)
(개정 2012. 3. 27. 규정 제280호)
(개정 2012. 6. 7. 규정 제282호)
(개정 2012. 9. 18. 규정 제287호)
(개정 2013. 5. 31.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3. 6. 24. 규정 제291호)
(개정 2013. 9. 1. 기록물관리규칙)
(개정 2013. 9. 17. 규정 제299호)
(개정 2013. 12. 19. 회계규칙)
(개정 2013. 12. 31.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4. 2. 26. 규정 제304호)
(개정 2014. 11. 26.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 2014. 11. 27. 규정 제313호)
(개정 2014. 12. 31. 규정 제319호)
(개정 2015. 4. 8. 규정 제324호)
(개정 2015. 12. 30. 규정 제332호)
(개정 2016. 3. 16. 규정 제333호)
(개정 2016. 6. 16. 규정 제338호)
(개정 2016. 7. 5. 규정 제339호)
(개정 2017. 9. 14. 규정 제357호)
(개정 2018. 4. 4. 규정 제362호)
(개정 2018. 10. 30. 규정 제366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367호)
(개정 2019. 3. 20. 규정 제385호)
(개정 2019. 5. 23. 규정 제387호)
(개정 2019. 6. 12. 규정 제390호)
(개정 2019. 9. 2. 규정 제398호)
(개정 2019. 10. 18. 규정 제399호)
(개정 2020. 1. 22. 규정 제404호)
(개정 2020. 8. 21. 규정 제409호)
(개정 2020. 8. 21. 규정 제409호)
(개정 2021. 5. 4. 규정 제418호)
(개정 2021. 9. 17. 규정 제420호)
(개정 2022. 9. 27. 규정 제439호)
(개정 2023. 5. 3. 규정 제448호)

(개정 2024. 5. 24. 규정 제469호)
(개정 2024. 7. 8. 규정 제472호)
(개정 2024. 10. 30. 규정 제4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률구조

제1절 통칙

제1관 구조대상자

제2조(구조대상자) 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직업, 주거, 재산, 가족사항,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영세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개정 2020. 1. 22.>

제2관 구조신청 및 접수

제3조(구조신청) ①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신청시 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사건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이하 “민사사건 등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고, 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 등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이하 “형사사건 등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장등서류작성구조사건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민사사건등 법률구조신청 및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10. 4.> <개정 2003. 1. 1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5. 6.> <개정 2005. 6. 30.> <개정 2005. 12. 5.> <개정 2006. 1. 17.>

<개정 2013. 12. 31.>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민사사건 등 신청서 기재사항 중 “사건번호”, “사건명” 및 “구조신청금액”란은 접수담당직원이 의뢰자의 주장사실 등을 종합하여 추후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1.> <개정 2015. 12. 30.>

③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자의 대리인이 법률구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 등의 경우 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선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개정 2015. 12. 30.>

④규칙 제7조제2항의 서류와 규칙 제11조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열람·출력이 가능한 서류는 의뢰자에게 제출받는 대신 접수담당직원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열람 또는 출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통이용센터에서 서류를 열람·출력할 경우에는 의뢰자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4. 5.> <개정 2010. 7. 1.> <개정 2014. 2. 26.> <개정 2015. 12. 30.>

⑤접수담당직원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내용을 조사보고 및 결정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일지에 기록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등서류작성구조사건은 사실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1.> <개정 2005. 5. 6.> <개정 2018. 12. 28.>

⑥제1항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4.>

⑦법률구조신청사건의 처리나 처리결과와 관련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은 의뢰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법률구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4.>

⑧담당직원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의뢰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뢰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와 제34조제4항에 따른 상소심사건 등의 구조신청을 받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4조(접수) ①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조의 각 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직원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형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형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각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부장, 법문화교육센터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재와 함께 조사담당변호사의 지정을 받는다. <신설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09. 7. 13.>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2. 30.>

②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8-2호 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 접수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민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00. 6. 21.> <개정 2014. 2. 26.> <개정 2018. 10. 30.>

③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신청서에 의하고 사건 접수담당직원은 민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신설 2002. 10. 4.> <개정 2014. 2. 26.>

④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법원(검사)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때에는 법원(검사)의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2-1호 서식의 국선변호인선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접수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10. 4.> <개정 2012. 3. 27.> <개정 2014. 2. 26.> <개정 2015. 12. 30.>

⑤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한 의뢰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접수담당직원 등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법률구조접수증명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6.> <개정 2014. 2. 26.>

제4조의2(이익충돌 사건의 처리절차) ①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직원은 신청사건이 범죄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때에는 신청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구조하고 있거나 구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②진행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신청하는 당해 사건을 제외한 이익충돌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직원은 구조대상자와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민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은 다음, 별지 제3-1호 서식의 법률구조위원 수임사건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06. 4. 28.>

③담당직원은 의뢰자에게 이익충돌 사건에 대한 구조절차를 설명하여야 하고, 의뢰자가 법률구조위원에 의한 구조를 원할 경우 지부장 등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수임변호사지정서에 의하여 사건의 조사 및 소송을 수행할 법률구조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④법률구조위원이 지정되면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법률구조위원에게 송부하고, 법률구조위원은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내용을 별지 제10-1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결정서에 의하여 지부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⑤법률구조위원은 소송구조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여야 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결과를 지부장 등에게 통지하고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6. 1. 17>

제4조의3(구조접수의 전산입력 및 전자문서화) ①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직원은 접수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입력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접수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제4조의 법률구조사건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 개정 '06. 1. 1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9. 14.>

②제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 등을 처리한 법률구조신청사건의 기록과 그 처리내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 또는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4.>

③담당직원은 법률구조신청사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처리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보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4.]

④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입력처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14.>

제3관 사실조사

제5조(구조대상자 해당 여부) ①의뢰자가 규칙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신청서에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8. 6. 26.>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6. 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공단 발행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로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경우 <개정 2019. 9. 2.>
   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나.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확인서, 지불각서 등(단, 당사자와 체불액 특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3.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7.>
   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선원: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서
   나.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선원임을 소명할 자료(지

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한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및 「선원법」 상의 재해보상 사고임을 소명할 자료(진단서 등)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시·군·읍·면장 또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 발급하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의 서류와 제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016. 7. 7.> <개정 2018. 4. 4.>

4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포함)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가목이나 나목의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경우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가목이나 나목의 어느 하나와 다목을 구비한 경우<신설 2020. 8. 21.><개정 2024. 10. 30.>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

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할 자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임을 소명할 국민연금 사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다.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

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중 어느 하나

4의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 : 환경부장관 발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신설 2021. 5. 4.>

4의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익소송사건처리지침에 따른 공익소송승인결정서<개정 2024. 7. 8.>

5. 법원소송구조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소송구조결정서 정본 또는 그 사본,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정서

6.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선대리인선정결정서 정본 또는 그 사본 <개정 2018. 10. 30.>

7.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또는 그 사본

8.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또는 그 사본

9.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사건의 채무자) : 불법사금융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사실확인서나 불법사금융피해 상담내역서 또는 금전차용 관련서류(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부약정서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증 등), 피해소명서류(공소장, 판결문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개정 2020.

1. 22.><개정 2020. 8. 21.>

10. 기타영세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직업, 주거, 재산, 가족사항, 학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국내 거주 외국인임을 소명하는 서류 및 위 해당 서류) <신설 2014. 11. 27.> <개정 2015. 12. 30.>

②조사담당변호사는 규칙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의뢰자가 전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항 제5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전 항 제5호 이외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99. 7. 29><단서 신설 '03. 12. 30> <개정 2008. 6. 26.> <개정 2015. 12. 30.>

③임금·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구조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당시 월평균수입 증빙서류로 구조대상자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0. 9. 28.>

④제2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 이혼, 부양료 등 청구와 같이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다른 가구원과의 별거, 연락두절 등 현실적 제약으로 다른 가구원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보호의지 없는 보호(위탁)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자의 소득과 의뢰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구

조대상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아동 등과 같이 의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소득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9. 28.> <개정 2005. 5. 6.> <개정 2006. 1. 17.> <개정 2015. 12. 30.>

⑤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기타 관계기관 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9. 28.>

⑥제1항제1호, 제10호 중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의뢰자가 당해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변호사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의뢰자가 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사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사사건등결정서의 조사의견으로 제1항의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3. 31.> <개정 2000. 9. 28.> <개정 2002. 6. 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1. 5.> <개정 2008. 6. 26.> <개정 2009. 9. 29.> <개정 2015. 12. 30.>

제6조(승소 및 집행가능성)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력을 조사하여 승소 후 집행가능성 유무를 확인한다. <개정 2000. 6. 21.>

②민사사건 등의 경우 조사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제7조(구조의 타당성) ①조사담당변호사가 규칙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사건 등에 대한 구조의 타당성을 조사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조타당성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6. 1. 17.> <개정 2015. 12. 30.>

1. 신의칙에 반하는 때
2. 사건의 성격상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요청하는 때
3.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인륜에 반하는 때
4. 대금업(사채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
5. 상대방의 주거안정이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인도·퇴거를 요청하는 때
6. 종중 등 소속원간의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때
7. 의뢰자가 제4항의 진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때
8. 기타 법률구조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의뢰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더라도 중증장애인, 문맹자 등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구조를 받지 못할 때에 부당한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률구조할 수 있다. <신설 2006. 1. 17.>

③조사담당변호사는 구조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에는 의뢰자와 해당 가구원의 자산, 건강상태, 교육수준, 부채,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 당해 지역의 변호사 선임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 17.> <개정 2015. 12. 30.>

④ 조사담당변호사는 의뢰자의 자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 1. 17.> <개정 2007. 4. 5.> <개정 2008. 6. 26.> <개정 2009. 9. 29.> <개정 2015. 12. 30.>

⑤<삭제 ‘19. 10. 18.>

⑥<삭제 ‘19. 10. 18.>

제7조의2(구조의 우선순위) 예산상 사정 등으로 구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우선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1. 부양료, 양육비 등 가족의 본질, 안전,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건
2. 개인파산・개인회생, 체불임금 등 가정의 경제적 안정유지를 위한 사건
3. 범죄피해, 가정폭력 등 안전, 건강과 관련된 사건
4. 건물인도, 퇴거 등 주거의 안정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건
5. 언어, 교육배경, 신체장애, 기타 사유로 사법체계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사건

<본조 신설 ’06. 1. 17>

제7조의3(형사사건의 구조타당성) ①형사사건이 국가존립에 관한 사건, 범죄단체조직원으로서 조직폭력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 테러범죄, 마약밀수・제조・판매범죄 등 공안을 해하는 사건, 존속폭행・존속상해범죄, 존비속살인범죄, 아동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인륜에 반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5조 제2항 제3호의 구조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뢰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할 수 있다.

②정식재판 청구사건, 재소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형사변호를 신청하는 사건은 규칙 제45조제2항제3호의 구조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범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거나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제1항에 명시된 사건으로 구속된 의뢰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접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 10. 18>

제8조(조사시 유의사항) ①조사담당변호사는 규칙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실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규명하고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소기간, 청구기간, 상소기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병합심리, 감정과 검증,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한 제반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15. 12. 30.>

②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승소가능금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의사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제9조(조사방법) ①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나 참고인 또는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편, 전자우편, 유·무선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별지 제5-1호 서식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 출석요청서에 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일지에도 통지방법, 출석상황, 조사일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록하되,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일지에 자필서명을 받는다. 다만, 자필서명을 받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청취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9. 28.> <개정 2005. 8. 18.>

<개정 2005. 12. 5.> <개정 2015. 12. 30.>

②규칙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실조회의뢰서 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15. 12. 30.>

③사실조사는 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민사사건 등은 1월 이내에, 형사사건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21.> <개정 2005. 7. 11.> <개정 2012. 9. 18.>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3. 16.> <개정 2019. 9. 2.><개정 2021. 9. 17.>

④조사담당변호사는 제3항의 조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뢰자가 치료를 계속 중이거나 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에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조사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지부장 등으로부터 조사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1.>

⑤조사담당변호사는 조사담당직원에게 법률구조요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직원은 사실조사를 종료하면 즉시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각 조사보고 및 결정서의 조사종료보고 의견을 작성하여 조사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18. 12. 18.>

제10조(구조신청의 취하) ①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률구조신청취하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15. 12. 30.>

②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가 법률구조신청을 취하하거나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민사사건 등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결정서에 의하여 형사사건 등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형사사건등결정서에 의하여 각 취하 또는 취하간주결

정을 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15. 12. 30.>

제11조(이송) ①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각 결정서에 의하여,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형사사건등결정서에 의하여 각 이송결정을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2. 6. 7.> <개정 2014. 2. 26.>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이송결정이 있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제1항 각 결정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지부 등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법률구조신청 또는 사실조사시 의뢰자에게 이송사실을 고지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일지에 의뢰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무선통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 민사사건 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형사사건은 별지 제47호 서식의 각 이송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5. 12. 5.>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9. 28.> <개정 2007. 10. 31.> <개정 2014. 2. 26.>

③형사사건 등을 이송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송하는 기관은 사건이송서와 이송결정서 및 기록의 중요부분을 관할 지부 등에 모사전송하여 미리 법률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후 원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15. 12. 30.>

제12조 <삭제 '00. 6. 21>

제2절 민사사건 등의 처리 <개정 2000. 6. 21.>

제1관 구조여부의 결정

제13조(소송전구조) ①조사담당변호사는 구조요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소송을 제기하면 의뢰자가 승소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는 등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민사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구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결정서에 의하여 소송전구조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15. 12. 30.>

제14조(공정증서작성에 의한 특례) ①당사자간에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장래의 금전채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조사담당변호사는 그 내용을 어음·수표로 작성하여 공증하도록 주선한다.

②제1항의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부장 등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결정서에 의하여 공증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③제2항의 공정증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소송구조가 종료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1999. 7. 29.>

제15조(소액사건의 구조) ①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 중에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여 의뢰자에게 소장등서류작성 및 소송절차안내 등을 통하여 구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부장 등이 소장등서류작성구조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1.>

②전 항의 결정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민사사건등 법률구조신청 및 결정서에 의하고 소장등서류작성구조 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05. 5. 6.> <개정 2015. 12. 30.>

제16조(구조여부 등 결정) ①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변호사의 사실조사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사의견에 의하고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변호사의 구조중단 요청은 별지 제10-2호 서식의 구조중단 의견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2. 6. 7.> <개정 2006. 12. 28.> <개정 2015. 12. 30.>

②규칙 제19조제2항, 제4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구조, 구조기각의 각 결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결정서에 의하에 의하되, 구조기각 결정시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조기각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중단의 결정은 별지 제10-2호 서식의 구조중단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6. 12. 28.> <개정 2014. 2. 26.> <개정 2015. 12. 30.><개정 2024. 5. 24.>

③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구조승인신청서에 의하고, 구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민사사건등승인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승인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14. 2. 26.>

④제3항의 구조승인신청사건은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이 미리 기록을 검토한 후 별지 제22

호 서식의 승인신청사건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⑤이사장은 제4항의 승인신청사건검토보고서를 참작하여 구조승인 여부를 별지 제25호 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지부 등에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을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정취소 등) ①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한 국선대리인 선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같은 규칙 제7조에 규정한 국선대리인의 사임사유가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취소 또는 사임허가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정취소 또는 사임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지부장등에게 국선대리인선정취소결정서 또는 사임허가결정서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1.> <개정 2007. 9. 28.>

②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사임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취소 또는 사임허가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정취소 또는 사임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전 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③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2항과 같다 <신설 2000. 6. 21.> <개정 2018. 10. 30.>

제16조의3(법원소송구조의 구조중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되어 소송수행을 하다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에 의하여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한 경

우 또는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법원소송구조 취소결정서 또는 사임서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4.> <개정 2007. 9. 28.>

제17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구조기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1호 서식의, 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2호 서식의, 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중단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3호 서식의 각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구조결정의 통지는 유·무선통화, 면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단서 신설 '03. 12. 30> <개정 2012. 6. 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8. 10. 30.> <개정 2018. 12. 28.>

②제1항에 의한 구조기각 또는 구조중단 결정의 통지서에는 구조기각 또는 구조중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③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이의신청서에 의하고,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건 기록의 송부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의신청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3. 12. 30.> <개정 2015. 12. 30.>

④ 지부장 등은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사건개요, 구조기각의 구체적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등을 자세히 기재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4.>

제18조(이의신청의 심사결정) ①본부의 담당직원이 제17조 제3항의 이의신청사건기록송부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1호 서식의 민사사건 등 이의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여 이의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4. 2. 26.>

②상임위원은 이의신청사건기록을 미리 검토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상임위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중앙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사회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24-1호 서식의, 규칙 제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사회의 결정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8. 12. 30.> <개정 2015. 12. 30.>

제19조(결정통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구조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구조기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6-1호 서식의, 각하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6-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이의신청사건)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8. 12. 30.> <개정 2015. 12. 30.>

제2관 소송구조

제20조(소송구조사건의 관리) ①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사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송구조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송구조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사건등결정서에 의하여 지부장 등으로부터 수임변호사의 지정을 받는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2. 10. 4.> <개정 2003. 12. 30.> <개정 2007. 3. 13.> <개정 2012. 9. 18.> <개정 2015. 12. 30.>

②국선대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정보고서에 의하여 사건번호와 소송구조번호를 부여하고 국선대리인선정보고서에 별표 4의 결재인을 찍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2. 10. 4.> <개정 2007. 3. 13.>

③소송구조사건은 소제기일자·소송종결일자·판결문교부·구조중단 등 소송진행상황, 예납금·승소금, 소송비용지출, 소송비용상환

결정·상환·면제, 소송비용회수 등 별지 제27호 서식의 민사사건등소송구조사건관리카드 소정의 사항을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10. 4.> <개정 2007. 3. 13.>

④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구조위원을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부장 등은 별지 제3-2호 서식 수임변호사지정서에 의해 소송을 수행할 법률구조위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법률구조위원 수임사건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5. 23.>

⑤지부장 등은 국가배상사건의 경우 우선 소속변호사를 수임변호사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공익법무관이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의뢰자가 국가배상사건의 상대방 소송수행자가 공익법무관임을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법률구조위원을 수임변호사로 지정한다. <신설 2008. 1. 14.>

제21조(법률구조계약) ①규칙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각 민사사건등법률구조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6. 21.><단서 신설 '02. 10. 4><단서 삭제 '03. 12. 30> <개정 2015. 12. 30.>

②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대한 소송위임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에 의하고, 법률구조위원에 대한 소송위임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에 의한다.<단서 신설 '02. 10. 4><단서 삭제 '03. 12. 30>

③소송구조 지정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계약은 별지 제28-2호 서식에 의하고, 지정변호사에 대한 위임장은 별지 제30-1호 서식에 의한다. <본항 신설 '06. 1. 17> <개정 2014. 2. 26.>

④법률구조계약을 할 때에는 수임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소심사건, 보전사건, 집행사건, 기타사건 등을 추가로 구조하는 때에는 원 법률구조계약서에 관련사건을 기재하고 의뢰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본항 신설 '07. 5. 23>

제22조(상소심사건 등 구조) 소송구조결정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자가 추가로 보전사건, 집행사건, 기타사건 및 상소심사건 등의 구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상소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에 따라 구조신청을 받아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7. 5. 23.> <개정 2011. 9. 30.>

제23조(소송업무보고) ①수임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각 사건별로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의 법률구조 중 진행종결에 소제기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민사사건등소제기보고를 갈음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의 사본 우측 상단 여백이나 이면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민사사건등 소송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패소로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2-4호 서식에 의하여 민사사건등 소송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2. 6. 7.> <개정 2005. 1. 5.><단서 개정 '06. 1. 17> <개정 2007. 1. 30.>

②수임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에 의뢰자가 구조신청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률구조신청취하서에 나타난 취하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원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지부장 등의 확인을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30.>

③제2항의 경우 수임변호사는 법원제출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법률구조신청취하서 우측 상단여백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지부장 등에게 민사사건 등 소송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30.>

④수임변호사는 지부장 등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2-3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사건등소송진행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11. 9. 30.>

제23조의2(소송사건진행의 관리) ①수임변호사는 규칙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직후 및 필요한 경우 의뢰자에게 소송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통지는 유선, 면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선, 면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소송수행상 중요한 증거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변호사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 서식의 소송진행상황통지서에 의하고, 유선, 면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경우 송무담당직원은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의 법률구조 중 별지 제32-6호 서식의 사건진행내역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통지내용 등을 구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28.> <개정 2006. 12. 28.> <개정 2010. 4. 30.> <개정 2018. 12. 28.>

④수임변호사는 소송수행과정에서 의뢰자와 면담 또는 통화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한 사항이나 제출서류 등을 별지 제32-7호 서식의 면담(통화)일지에 기록하고,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통화)일지에 자필서명을 받는다. 다만, 자필서명을 받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청취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5. 8. 18.>

⑤수임변호사는 매 기일에 출석하여 진행한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32-8호 서식의 소송사건진행경과서에 기재한다. <신설 2005. 8. 18.> <신설 2005. 12. 5.>

제24조(수임변호사의 임무 등) ①수임변호사는 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구조결정 후 1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소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제소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11.> <개정 2010. 4. 30.>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9. 2.><개정 2021. 9. 17.>

②<삭제 '16. 3. 16.>

③수임변호사는 제소준비 중에 의뢰자가 스스로 구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구조신청취하서 등 우측 상단여백이나 이면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1.> <개정 2002. 6. 7.> <개정 2005. 7. 11.>

④ <개정 2000. 6. 21.> <개정 2005. 7. 11.><삭제 '07. 3. 13>

⑤수임변호사는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거 타 지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5. 6.> <개정 2005. 7. 11.>

제3관 승소가액의 산정 <신설 1999. 1. 19.>

제25조(정기금사건) 정기금청구사건의 경우 기간의 정함과 상관 없이 기발생분 및 3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단,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발생분과 그 기간분의 정기금 합산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제26조(본소 · 반소사건) 본소 및 반소 사건의 승소가액은 각각 산정한다. <개정 2012. 6. 7.>

제27조(항소심사건) ①의뢰자만이 항소하여 의뢰자가 원심보다 더 유리하게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리하게 된 부분의 금액

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②상대방만이 항소하여 의뢰자가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복한 부분의 금액에서 그 불리하게 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③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의 판결결과가 원심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복한 부분의 금액만을 승소가액으로 보고, 의뢰자가 원심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된 부분의 금액과 상대방이 불복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승소가액으로 보고, 의뢰자가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복한 금액 중에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④부대항소의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27조의2(상고심사건) ①의뢰자만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승소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의뢰자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의뢰자가 불복한 금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③상대방만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복한 금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④상대방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승소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상고심에서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쌍방이 상고하여 쌍방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제3항을, 의뢰자의 상고만 인용된 경우에는 제2항을, 상대방의 상고만 인용된 경우에는 제4항을 각 준용한다.

제27조의3(파기환송사건) ①파기환송 후 판결이 파기환송 전의 판결보다 의뢰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승소가액으로 본다.

②파기환송 후 판결이 파기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경우에는 승소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파기환송 후 판결이 파기환송 전 판결보다 의뢰자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경우에는 승소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4(파산사건)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된 채권액을 각 승소가액으로 본다.

제27조의5(개인채무자회생사건) 개인채무자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결정당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액에서 총변제예정액의 차액을 승소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변제예정액은 변제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적용 환산한 현재가치액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

제4관 소송비용의 상환 및 면제

제28조(소송비용의 상환) ①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상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소송비용상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민사사건 등 의뢰자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통지서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통지한다. 다만, 국선대리사건 및 지부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소송구조사건이나 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건으로 의뢰자의 비용부담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상환통지를 생략한다.<단서 신설 '00. 6. 21> <개정 2002. 10. 4.><단서 개정 '03. 12. 30> <개정 2007. 3. 13.> <개정 2012. 6. 7.>

③소송비용을 상환받은 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지부장 등에게 보고한다.

④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판결문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의뢰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유료법률구조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정본 교부 전에 소송비용의 상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개정 2007. 3. 13.>

제29조(소송비용의 상대방상환) 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승소금에 대한 변제최고서에 의한다.<개정 '15 12. 30.>

제30조(소송비용의 상환면제) ①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장 등의 소송비용상환면제허가신청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고, 이사장의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은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서 또는 별지 제37-2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면제심의내역서를 첨부한 일괄결재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8. 12. 30.>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소송비용상환면제결정이 있으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소송비용상환면제통지서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7. 3. 13.>

제5관 법원소송구조사건의 변호사보수 청구절차<본관 신설 '02. 10. 4>

제31조(변호사보수청구) ①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는 당해 심급 종결 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판결 내용 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청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에 따라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가 발생한

경우 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별지 제34-1호 서식의 변호사보수청구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변호사보수를 수납받은 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지부장 등에게 보고한다.

제32조(변호사보수납부면제결정) 제31조에 따라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별지 제37-1호 서식에 의한 변호사보수납부면제결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소송종료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함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납부의무를 면제함이 공단설립목적 등 취지에 합당한 경우
3. 기타 지부장 등이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납부의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15. 4. 8.]

제33조<삭제> <2015. 4. 8.>

제3절 형사사건 등의 처리 <개정 2015. 12. 30.>

제34조(구조여부 등 결정) ①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변호사의 의견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조사의견에 의하고, 규칙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변호사의 의견서는 별지 제44-1호 서식의 구조중단의견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2. 6. 7.> <개정 2006. 12. 28.> <개정 2015. 12. 30.>

②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구조, 구조기각의 각 결정과 규칙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기소된 병합사건의 구조여부 결정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형사사건등결정서에 의하되, 구조기각

결정시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조기각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규칙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중단의 결정은 별지 제44-1호서식의 구조중단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02. 6. 7.> <개정 2006. 12. 28.> <개정 2014. 2. 26.> <개정 2015. 12. 30.><개정 2024. 5. 24.>

③<삭제 '00. 1. 5>

④소송구조결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소심사건 등의 구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2호 서식의 상소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 및 결정서에 따라 구조신청을 받아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4. 2. 26.>

제34조의2(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①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사건을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에 본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이하 '본부 형사심사회'라 한다)를, 지부에 지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이하 '지부 형사심사회'라 한다)를 각 둔다.<개정 '15 12. 30.>

②본부 형사심사회, 지부 형사심사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고, 본부 형사심사회 위원은 이사장이, 지부 형사심사회 위원은 지부장이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직원 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본부 형사심사회 위원장은 구조국장을, 지부 형사심사회 위원장은 지부장을 각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④지부 형사심사회는 지부장 등이 심사 의뢰한 사건을 심사하고, 본부 형사심사회는 지부 형사심사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건을 심사한다.

⑤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는 필요에 따라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

로 한다.

⑦지부 등에 접수된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사건을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변호사는 별지 제45-1호 서식의 조사담당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부장 등은 당해 사건을 지부 형사심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 형사심사회위원장은 지부 형사심사회에서 반인륜범죄 해당 여부 등 구조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본부 형사심사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5 12. 30.>

⑧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는 그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⑨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 형사심사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⑩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의 간사는 별지 제45-1호 서식의 조사담당변호사 의견서를 심사안건으로 하여 본부 형사심사회 또는 지부 형사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본부 및 지부 형사심사회는 심사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심사의결시 본부 형사심사회는 별지 제45-2호 서식의 본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에 의하고, 지부 형사심사회는 별지 제45-3호 서식의 지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에 의하며, 지부장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구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5 12. 30.>

⑫ 본부 형사심사회의 간사는 별지 제45-2호 서식의 본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 사본을, 지부 형사심사회의 간사는 별지 제45-3호 서식의 지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지부 등에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15 12. 30.>

[본조신설 2009. 12. 3.]

제35조(국선변호인 선정취소 등) ①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형사소송규칙 제18조에 규정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사유가 있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에 규정한 국선변호인의 사임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검사)에 국선변호인 취소 또는 사임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검사)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취소 또는 사임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서 또는 사임허가결정서에 별표 5의 결재인을 찍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개정 2012. 3. 27.>

②법원(검사)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신설 1999. 7. 29.> <개정 2012. 3. 27.>

제36조(결정통지) ①규칙 제4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각 결정 통지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별지 제50-1호 서식의, 별지 제50-2호 서식의 각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다만, 구조결정의 통지는 유·무선통화, 면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 <개정 2015. 12. 30.><단서신설 '18. 12. 28.>

②제1항에 의한 구조기각 또는 구조중단의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의뢰자가 그 기각 또는 중단사유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규칙 제4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등이의신청서에 의하고, 지부장 등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이의신청사건송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0. 1. 5.><개정 '15 12. 30.>

제38조(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①본부의 담당직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건송부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3호 서식의 형사사건등이의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3. 4. 12.><개정 '15 12. 30.>

②중앙심사회의 상임위원은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자료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4호 서식의 상임위원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상임위원의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구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결정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0. 1. 5.> <개정 2015. 12. 30.>

⑤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에 의하고, 구조기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56-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이의신청사건)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제39조(소송구조사건의 관리) ①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사건 등의 소송구조사건관리카드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형사소사건등송구조사건관리카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1. 8. 6.><개정 '15 12. 30.>

②소송구조사건 담당직원은 소송구조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송구조번호를 부여하고 형사사건등결정서 또는 국선변호인선정보고서 여백에 별표 4의 결재인을 찍어 지부장 등으로부터 수임변호사 지정을 받는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1. 8. 6.> <개정 2007. 3. 13.> <개정 2012. 3. 27.><개정 '15 12. 30.>

③소송구조사건의 관리는 소송진행상황 등 별지 제57호서식의 형사사건등소송구조사건관리카드 소정의 사항을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7. 3. 13.><개정 '15 12. 30.>

제40조(법률구조계약) ①형사사건 등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계약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형사사건등법률구조계약서에 의하고,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형사사건등법률구조계약서에 의한다.<개정 '15 12. 30.>

②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대한 소송위임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변호인선임신고서에 의하고, 법률구조위원에 대한 소송위임은 별지 제60-1호 서식의 변호인선임신고서에 의한다.

제41조(수임변호사의 임무) ①수임변호사는 형사사건(국선변호사건 포함)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에 재판결과를 입력하고 매월 종료한 사건의 재판결과를 일괄 집계하여 형사사건 등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개정 2002. 6. 7.> <개정 2006. 1. 17.> <개정 2008. 1. 14.><개정 '15 12. 30.>

②수임변호사는 지부장 등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61-1호 서식에 의하여 따로 형사사건등진행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개정 '15 12. 30.>

제3장 법률상담

제42조(면접상담) ①<삭제 '05. 5. 6>

②접수담당직원은 별지 제39-1호 서식의 면접상담대기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상담사건명과 의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토록 한다. 단, 의뢰자가 문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대필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1. 9. 30.>

③상담직원은 면접상담 후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구분 입력한다. <개정 2000. 1. 5.> <개정 2003. 12.

30.> <개정 2019. 10. 18.>

1. 접수일자

2. 상담자, 상담시간, 장소(사무실 제외)

3. 의뢰자 성명 및 연락전화번호

4. 법률분류(상담사건명)

5. 상담내용 및 답변내용

6. 답변일자 및 답변내용분류

④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를 타 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해결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률상담소, 농협중앙회상담실, 국세청상담실, 병무청상담실 등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안내한다. <개정 2015. 12. 30.>

제43조(서신상담 등) ①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신상담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이에 대한 회신문을 작성하여 지부장 등의 결재를 얻어 회신하고,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의 법률상담 중 별지 제41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서신)에 소정사항 및 그 회신 내용을 구분 입력한다. <개정 2002. 10. 4.> <개정 2003. 12. 30.> <개정 2015. 12. 30.>

②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상담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채팅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화상상담은 면접상담의 예를 따르며, 채팅상담은 전화상담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12. 30.> <개정 2023. 5. 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상담 및 화상상담, 채팅상담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

제44조(전화상담)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상담 후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KLAC)에 아

래 각 호의 사항을 구분 입력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10. 18.>

1. 접수일자
2. 상담자, 상담시간
3. 연락전화번호(다만, 사후 보완 답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뢰자의 성명을 입력할 수 있다)
4. 법률분류(상담사건명)
5. 상담내용 및 답변내용
6. 답변일자 및 답변내용분류

제45조(상담종결사건의 사후확인) ①상담직원은 상담결과 그 내용 중에 착오 또는 미흡한 부분, 법률구조를 요하는 사안 기타 참고가 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사후 보완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상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19.> <개정 2001. 8. 6.> <개정 2003. 12. 30.>

②지부, 출장소 및 지소의 구조부장 또는 구조팀장은 상담내용을 수시 점검하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06. 6. 26.> <개정 2009. 7. 13.> <개정 2018. 12. 28.>

제4장 민원사무

제46조(민원서 접수 및 처리) ①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접수결재를 얻는다. <개정 2015. 12. 30.>

②민원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전 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한다.

제4장의2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 <신설 2020. 1. 22.>

제46조의2(대상사건) 채무자대리사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규정된 통지 등 채무자 및 관계인 보호·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과태료제재 사건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관련 사건을 포함한다.<개정 2020. 8. 21.><개정 2024. 7. 8.>

1.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고금리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 불법 추심 및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등 사건
3.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제46조의3(대상자) 채무자대리사건의 대상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거나 채권추심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인 경우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채무자 및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의2 전단의 사건에는 소득기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8. 21.><개정 2024. 7. 8.>

제46조의4(비용산정 및 비용부담) ①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의 변호사보수는 대리기간 6개월 단위로 200,000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건 및 구조중단 사건도 이와 같다. 다만, 채무자와 관계인이 채권추심법 제8조의3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및 동법 9조에 따른 불법추심금지를 요청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실과 함께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연락 및 불법추심행위 금지를 통지하는 관계인 지원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 7. 8.>

②과태료제재 사건은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제46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사건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

한 상환결정 등은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사건 처리절차에 따른다.

④채무자대리사건의 의뢰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금융위원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비용은 의뢰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5(사건처리절차 등) ①채무자대리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채무자대리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사건 등 처리규정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장 중앙법률구조심사회의 기능 및 운영 <개정 2000. 1. 5.>

제47조(기능)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회”라 한다)는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사사건 등의 이의신청사건을 재심사하고 그 당부를 결정하며, 법률구조의 범위, 대상 및 요건, 처리절차 등 구조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00. 1. 5.> <개정 2015. 12. 30.>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중앙심사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1. 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사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 5.>

제4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의 위촉)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2-1호 서식에 의거 작성·날인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00. 1. 5.>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6. 12.>

제51조(위원의 해촉) ①이사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00. 1. 5>

1. 인사발령 등으로 당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일신상의 사정 등을 이유로 위원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는 등 직무수행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규칙 제22조의2(위원의 제척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9. 6. 12.>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촉 일로부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개정 2000. 1. 5.>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중앙심사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의 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0. 1. 5.>

제53조(소집 및 의사) ①중앙심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 1. 5.>

②전 항에 의한 중앙심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개정 2000. 6. 21.>

③중앙심사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1. 5.>

제54조(상임위원의 직무) ① ~ ② <삭제 '04. 11. 17>

③상임위원은 제16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중앙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상임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 1인을 지명한다. <신설 2004. 11. 17.> <개정 2019. 6. 12.>

제55조(간사) ①중앙심사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중앙심사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소관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②간사는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간사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심사안건의 표지, 별지 제64호 서식의 심사안건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각 사건별 상임위원의 의견서 등을 심사안건기록에 첨부하여 중앙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④간사는 위원의 위촉·해촉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66호 서식의 위원명부를 관리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제56조(심사결정기간) 중앙심사회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8.>

제5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위원장은 중앙심사회에서 심사·결정한 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와 당해 사건기록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②간사는 전 항의 심사·결정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제58조(보류사건의 처리) 중앙심사회에서 조사미진 등의 사유로 심사·결정이 보류된 사건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중앙심사회에 회부하여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0. 1. 5.>

제5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①위원장 및 위원은 이의신청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 또는 사건관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기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②중앙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규칙에 의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제60조(회의록의 작성·관리) 간사는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제61조(위원회 심의방식) ①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은 별지 제55-1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사에 회부하여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사로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1. 제소기간의 도래, 심사결정기간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건 <개정 '15 12. 30.>
2. 위원들이 상임위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구조여부 등의 결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사건 <신설 2019. 6. 12.>
3.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소집이 곤란하여 위원장이 서면심사에 회부한 사건<개정 '15 12. 30.>

②제1항 단서의 서면심사에는 제53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0. 4.>

<본조 신설 '02. 6. 29>

제62조(비밀유지) 위원은 중앙심사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1. 5.>

제63조(수당지급) ①중앙심사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보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②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별지 제68호 서식의 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1999. 7. 29.>

부 칙 <1987. 11. 16.>

이 규정은 198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28.>

이 규정은 198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8.>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4.>

이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3.>

이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28.>

이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5.>

이 규정은 199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27.>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2.>

제1조(다른 규범의 폐지) 출석의뢰서양식개선에관한예규(예규 제1

호)는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범의 개·폐) ①법률구조사업운영에관한통일적처리지침 중 "2-다-(2)"는 이를 삭제한다.

②사건 621-710에 의한 진술서 양식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29.>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서식 기재의 특례) 소년부송치사건에 있어서 사건 본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서식 중 피고인란에 기재한다.

부 칙 <1996. 7. 10.>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9.>

이 규정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1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5.>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조대상자와 관련한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폐지) 법률구조심사위원회운영규칙시행규정과 법률구조사업운영에관한통일적처리지침 및 소송구조사건사무에관

한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사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민사·가사사건의 변호사보수산정과 관련한 승소가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소송구조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률구조심사위원회운영규칙 및 동 규칙시행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및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동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부 및 지부 등 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비교할 때 개정사항의 근본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의 서식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월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명칭의 변경) 이 규정이 별지 제4호, 제5호, 제5-1호, 제5-2호, 제8호 서식 중에서 “상임위원 변호사(공익법무관), 검사”의 명칭은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로 하고 별지 제44호, 제46호, 제47호 서식 중에서 “피고인”은 “의뢰자(피고인)”로 “의뢰자”는 “대리인”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한다.

부 칙 <1999.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

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법원과 검찰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 3. 31.>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 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1.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2002. 3. 8. 모자보건법 법률 제4121호)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법원소송구조사건으로 법률구조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12. 3.>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4. 10.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7.>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5.>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8. 18.>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4. 28.>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12. 28.>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7. 1. 30.>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3.>

이 규정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5.>

이 규정은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3.>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이 규정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7. 9. 28.>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3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3호 나목 (1) 개정규정,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42호 서식 후면 중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중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3항 중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4호,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42호 서식 후면 중 “260만원”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항 중 “260만원”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2. 28.>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

이 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5.>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0.>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 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1. 2. 28.>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5호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30.>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변경) 제4조 제4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9조 제2항, 별지 제42-1호 서식 중 “법원”을 각각 “법원(검사)”로, “선정”을 각각 “선정(지정)”으로, 별지 제42호 서식 중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로, 별지 제42-1호 서식, 별지 제57호 서식, 별지 제60호 서식, 별지 제60-1호 서식 중 “(피의자)”를 각각 “(피의자, 피해자)”로,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4-1호 서식, 별지 제45-1호 서식, 별지 제45-2호 서식, 별지 제45-3호 서식, 별지 제47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52호 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별지 제54호 서식, 별지 제55호, 별지 제61-1호 서식 중 “(피고인·피의자)”를 각각 “(피고인·피의자·피해자)”로 한다.

부 칙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변경)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42호 서식의 후면, 제5조 제1항 제28호, 제31호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를 각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로, 제5조 제1항 제16호, 제29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력 요약/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로 한다.

부 칙 <2012.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변경) 제3조 제3항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4조 제1항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3호 서식의, 제4조 제2항 별지18-2호 서식의, 제4조 제4항 별지 제42-1호 서식의, 제9조 제1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제9조 제5항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11조 제2항 별지 제10-1호 서식의, 제16조 제1항 별지10-2호 서식의, 제17조 제3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제20조 제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제34조 제1항 별지 제44-1호 서식의, 제34조의2 제7항 별지 제45-1호 서식의, 제38조 제2항 별지 제54호 서식의, 제39조 제1항 별지 제5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2013. 6. 24.>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7.>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

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되, 2014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용어변경) 제4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별지 제42-1호 서식 중 “선정(지정)”을 “선정”으로 한다.

부 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변경) 별지 제15-1호, 제15-2호, 제15-3호, 제26-1호 및 제 26-2호 서식의 변호인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한다.

부 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변경) 별지 제42호 서식 ‘형사법률구조신청서’를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로, 별지 제43호 서식 ‘형사법률구조사건부’를 ‘형사사건등법률구조사건부’로, 별지 제44호 서식 ‘형사결정서’를 ‘형사사건등결정서’로, 별지 제44-1호 서식 ‘구조중단결정서(형사)’를 ‘구조중단결정서(형사사건 등)’로, 별지 제45-2호 서식 및 제45-3호 서식의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각 ‘형사사건등법률구

조심사위원회'로, 별지 제51호 서식 '형사이의신청서'를 '형사사건등이의신청서'로, 별지 제53호 서식 '형사이의신청사건부'를 '형사사건등이의신청사건부'로 별지 제57호 서식 '형사소송구조사건관리카드'를 '형사사건등소송구조사건관리카드'로, 별지 제58호 서식 및 제59호 서식의 '형사법률구조계약서'를 각 '형사사건등법률구조계약서'로, 별지 제61-1호 서식의 '형사사건진행상황보고'를 '형사사건등진행상황보고'로 한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 3. 16.>

이 규정은 2016년 3월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6. 7. 7.>

제1항(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7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7.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전자문서로 저장, 입력되어

있는 문서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등의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명의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민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를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로, 별지 제1-3호 서식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를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소장등)”로, 별지 제1-6호 서식 “상소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를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상소심사건 등)”로, 별지 제10호 서식 “민사사건 등 결정서”를 “조사보고 및 결정서(민사사건 등)”로, 별지 제10-1호 서식 “민사사건 등 결정서”를 “조사보고 및 결정서(민사사건 등)”로, 별지 제44호 서식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신청서”를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로, 별지 제42-2호 서식 “상소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를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상소심사건 등)”로, 별지 제44호 서식 “형사사건등결정서”를 “조사보고 및 결정서(형사사건 등)”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서식과 그 내용이 근본취지에 있어서 배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

개월간 함께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9. 3. 20.>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3.>

이 규정은 2019년 5월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2.>

이 규정은 2019년 6월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기간 및 제소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9.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0.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0.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및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소상공인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채무자대리 선임사건(과태료 제재사건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1. 9. 17.>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후면”, [별지 제7호 서식] “후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3.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43조 제2항’을 ‘제43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24. 10. 30.>

이 규정은 2024년 10월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14. 2. 26>

[별표 2]<삭제 ’14. 2. 26>

[별표 3]<삭제 ’14. 2. 26>

[별표 3-1]<삭제 ’14. 2. 26>

[별표 3-2]<삭제 ’14. 2. 26>

[별표 4] <개정 ’00. 6. 21><개정 ‘06. 6. 26><개정 ‘09. 7. 13>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지 부	○○팀장	20 . . .	구조부장	지 부 장
		소 송 구 조 제 호		
		수임변호사 ○ ○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출장소	○○팀장	20 . . .	구조부장	출장소장
		소 송 구 조 제 호		
		수임변호사 ○ ○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지소	○○팀장	20 . . .		지소장
		소 송 구 조 제 호		
		수임변호사 ○ ○ ○		

93㎜×27㎜(고무인)

[별표 5] <신설 ’02. 6. 7><개정 ‘06. 6. 26><개정 ‘09. 7. 13>

사건번호		사건명			
판 결 문 수령일자		상소기간	20 . . 까지	수임변호사	
결 재	주 무	고객지원팀장	구조부장		○○지부장
소송결과통지	통지방법	통지일자	통지자		
			수령자		

140mm×45mm(고무인)

사건번호		사건명			
판 결 문 수령일자		상소기간	20 . . 까지	수임변호사	
결 재	주 무	구조팀장			○○출장소장
소송결과통지	통지방법	통지일자	통지자		
			수령자		

140mm×45mm(고무인)

사건번호		사건명			
판 결 문 수령일자		상소기간	20 . . 까지	수임변호사	
결 재	주 무	구조팀장			○○지소장
소송결과통지	통지방법	통지일자	통지자		
			수령자		

140mm×45mm(고무인)

[별지 제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0. 9. 28><개정 '05. 12. 5><개정 '06. 12. 28><개정 '08. 7. 2><개정 '11. 9. 30.><개정 '13. 9. 1.><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

사건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1월 (연장 가능)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의 뢰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송달장소		전 화	
	직 업 (대상자)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상 대 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송달장소		전 화	

신청사실의 요 지	사 건 명	구조신청금액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대상자 및 당사자 관련	
	승소가능성(입증방법) 관련	
	집행가능성 관련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접수확인	접수담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조사담당 직 원
		전 결		조사담당변호사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7. 4. 5><개정 '07. 8. 31><개정 '11. 9. 30.><개정 '12. 9. 18.>

위 임 장

위임을 받을 사람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의뢰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주 소			

의뢰자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하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래 기재된 내용의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아 래

※ 위임할 사항은 □에 V표시를 하고 위임하지 아니할 사항은 두 줄을 긋고 날인 하십시오

□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취하
□ 법률구조사무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출력에 대한 동의
□ 법률구조계약 체결

※ 공단에서 의뢰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의 뢰 자 (인)
생 년 월 일
주 소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07. 4. 5><개정 '07. 8. 31><개정 '11. 9. 30.><개정 '12. 9. 18.>

위 임 장

위임을 받을 사람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의뢰자와의 관 계		전화번호	
	주 소			

의뢰자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하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래 기재된 내용의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아 래

※ 위임할 사항은 □에 V표시를 하고 위임하지 아니할 사항은 두 줄을 긋고 날인 하십시오

□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취하
□ 법률구조사무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출력에 대한 동의
□ 법률구조계약 체결

※ 공단에서 의뢰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의뢰자 외 명

의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금액	날 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1-3호 서식]<신설 '05. 5. 6><개정 '11. 9. 30.><개정 '13. 9. 1.><개정 '18.12.28.><개정 '19.9.2.>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소장등)

사건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1월 (연장 가능)

별첨 법률상담기록부 기재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위 사건에 대하여 *소장등서류작성구조* 의견으로 보고합니다.

구조대상자 판단근거 :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이므로* 구조대상자에 해당함

[ ] 법률구조신청취지, 청구금액, 의뢰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구조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첨부서류 : [ ] 소 장 [ ] 조정신청서 [ ] 지급명령신청서 [ ] 이의신청서 [ ] 가압류신청서

[ ] 경매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 재산명시신청서 [ ] 재산조회신청서

[ ] *(직접 입력)*

년 월 일

조사담당직원 *(서명 또는 인)*

조사담당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장등서류작성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접수 확인		결정내용	소장등서류 작성구조	기각	취하	기타	구조 여부 등 결정	
고객지원부(팀)장	*0 0* 장						구조부(팀)장	*0 0* 장
추가 소장등 서류작성구조	사건번호							
	결정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0 0* 지부(*0 0* 출장소 *0 0*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 서식]<신설 '07. 4. 5><삭제 '10. 6. 24.>

[별지 제1-5호 서식]<신설 '06. 1. 17><개정 '07. 4. 5>

진 술 서

[재산]

1. 귀하(또는 세대주와 부양의무자) 및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1번 질문에서 "예"라고 하셨다면 소재지, 면적, 재산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① 소재지 :
   ② 면 적 :
   ③ 재산가치 :

3. 1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하셨다면 주거 형태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 월세:)

4. 귀하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총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5.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6. 귀하 및 배우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종류, 연식 및 가격은 얼마입니까?

[수입]

1. 최근 12개월 동안의 귀하 및 배우자의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2. 위 소득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부채]

1. 귀하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의 총 부채는 얼마입니까?

2. 체납한 세금 등 기타 부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년 월 일

의뢰자 (인)

※ 위 사항을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이 발견될 경우 구조기각 또는 구조중단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10㎜×279㎜(모조지 70g/㎡)

[별지 제1-6호 서식]<신설 '07. 5. 23><개정 '07. 10. 31><개정 '09. 7. 13><개정 '11. 9. 30.><개정 '13. 9. 1.><개정 '15. 12. 30.><개정 '18.12.28.><개정 '19.9.2.>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상소심사건 등)

사건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1월 (연장 가능)

최초 사건번호 (공 단)		구조신청금액 (승소금액)		조사담당자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의 뢰 자		상 대 방	
신청사실의 요지	[ ] 상소심		
	[ ] 부동산 등 강제집행	집행목적물	
	[ ] 채권 등 강제집행	제3채무자 및 집행할 채권	
	[ ] 재산명시명령		
	[ ] 재산조회명령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 기타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구조대상자		[ ] 무료,	[ ] 일부무료, [ ] 유료 예납[ ], 예납유에 사유 있음 [ ]

수임변호사(조사담당변호사) 의견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수임변호사(조사담당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송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접 수	고문변호사(부장)	00 장	소송구조	구조기각	취 하	이 송	기 타	이 송 정 보
확 인	전 결							문서번호 :
결 재 및 배 당	구조부(팀)장	00 장	소송구조 제 호					수 신 :
			수임변호사					첨부서류 : 사건기록 일체
								통지일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00 지부(00 출장소 00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07. 6. 26><개정 '09. 7. 13><개정 '14. 2. 26>

법 률 구 조 접 수 증 명 서

사건번호 : 200 년 법구 제 호

의 뢰 자 :

상 대 방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신청서가 200 년 월 일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지소)장 (인)

☐ **참고사항**

1.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조여부는 민사·가사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형사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구조결정 및 법률구조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공단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 등 긴급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나의 사건 검색**

www.klac.or.kr 나의사건검색〉 나의사건 조회에서 사건진행상황 검색 가능

☐ **메 모**

210㎜×279㎜(모조지 70g／㎡)

[별지 제2호 서식]<개정 '99. 7. 29>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 실 조 사 일 지

조사일자 (통화일자)		조사대상자		사건과의 관계	
진술요지 및 제출서류					담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2. 6. 7><개정 '12. 9. 18.>

민 사 사 건 등 법 률 구 조 사 건 부

<table>
<tr><td rowspan="3">사건번호</td><td rowspan="3">접 수
연월일</td><td rowspan="3">의뢰자성명
(인 원)</td><td colspan="3">의 뢰 자 주 소</td><td>구조신청금액</td><td>원결정일자</td><td>원결정내용</td><td>조사자</td></tr>
<tr><td>생년월일</td><td>직 업</td><td>사건명</td><td>구조결정금액</td><td>재심결정일자</td><td>재심결정내용</td><td>소구번호</td></tr>
<tr><td>상대방성명</td><td colspan="3">상 대 방 주 소</td><td>수임변호사</td><td colspan="2">비 고</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able>

364㎜×257㎜(모조지180g/㎡)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06. 4. 28>

법률구조위원 수임사건 관리대장

연번	사건번호	의뢰자	상대방	유형	수임 법률구조 위원	결정 일자	결정 내용	법률구조 계약일자	기록인계		기록회수		접수 담당자	비고
									일자	인수자 (서명또는날인)	일자	수령자 (서명또는날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3-2호 서식] <신설 ’06. 4. 28><개정 ‘09. 7. 13>

수 임 변 호 사 지 정 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의 뢰 자 :

상 대 방 :

위 사건에 대하여 ○○지부(○○출장소○○지소) 법률구조위원 를

수임(조사)변호사로 지정합니다.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자력조사의뢰

년 법구 제 호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니 다음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20 . . . 까지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1) 주 소 :

(2) 성 명 :

나. 조사사항

(1) 동산, 부동산(공부상 소유권자가 다를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명시하기 바람)

(2) 생활정도

(3) 동거가족의 재산상황

(4) 기타 참고사항.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년 법구 제 호 20 . . .

출 석 요 청 서

1.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20 . . .(오전/오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께서 위 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당 공단으로서는 부득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취하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엽서와 도장, 주민등록증 및 기타 관련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우편봉함엽서)

[별지 제5-1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년 법구 제 호 20 . . .

출 석 요 청 서

1. 의뢰자 ○○○로부터 귀하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20 . . .(오전／오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께서 위 기일에 출석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 공단으로서는 부득이 ○○○ 의 주장에 근거하여 법률구조결정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엽서와 도장, 주민등록증 및 기타 관련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우편봉함엽서)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년 법구 제 호 20 . . .

출 석 요 청 서

1. 의뢰자 ○○○과 상대방 ○○○의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20 . . (오전／오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엽서와 도장, 주민등록증 및 기타 관련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 -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우편봉함엽서)

[별지 제6호 서식](갑)<개정 '99. 7. 29><개정 '09. 7. 13><개정 '12. 9. 18.>

<table>
<tr><td colspan="5">진 술 서</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통 반)</td></tr>
<tr><td rowspan="2">직 업</td><td rowspan="2"></td><td rowspan="2">전화번호</td><td>자 택</td><td></td></tr>
<tr><td>직 장</td><td></td></tr>
<tr><td colspan="5">본인은 의뢰자 , 상대방 간의</td></tr>
<tr><td colspan="5">법률구조신청사건의 으로 20 . . . 귀 사무소에서 다음과</td></tr>
<tr><td colspan="5">같이 임의 진술합니다.</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td></tr>
</table>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 서식](을)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 서식](병)

20 . . .

진술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귀중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2. 9. 18.>

진 술 청 취 서

(갑)

<table>
<tr><td colspan="6">1. 진술인의 인적사항</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통 반)</td></tr>
<tr><td>직 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건과의 관계</td><td rowspan="2"></td><td rowspan="2">전화번호</td><td>자 택</td><td colspan="2"></td></tr>
<tr><td>직 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2. 의뢰자 의 상대방 에 대한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년 법구 제 호 법률구조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진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진술을 청취함.

3. 법률구조신청사실의 요지(필요시 별지 사용)</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을)

4. 증거서류 가. 서증[서류명, 작성경위 및 입증사항, 서류보관처(형사기록의 경우 사건번호 포함)] 나. 증인(성명, 주소, 의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입증사항, 증인, 출석가능성 여부)
5. 진술인이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내용
6. 상대방의 재산상태(부동산, 채권, 또는 유체동산, 직업 및 월소득)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병)

7. 진술인의 제출서류(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8. 기타 특기사항 (사건의 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등)

20 . . .

조 사 자 (인)

진술인확인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7-1호 서식]<신설 '09. 12. 3>

접 견 결 과 서

사건번호	OO지부OO출장소 법구형 제 호	죄명	
의뢰자(피고인)			
면담일시 · 장소			
면담내용	※ 면담내용에는 범죄사실, 범행동기, 목적, 수단, 방법, 피해자 나이 · 성별,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구조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적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 제7조5항 소정의 범죄 해당여부			
구조타당성에 대한 의견			
비고			

20 . . .

위 보고자 :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사실조회의뢰

당 공단의 년 법구 제 호 법률구조신청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20 . . 까지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인쇄용지 60g/㎡)

[별지 제8-1호 서식]<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문서송부촉탁

당 공단 년 법구 제 호 법률구조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하오니 다음 문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서의 보관자

2. 문서의 표시

3. 문서송부 요청사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8-2호 서식]<신설 '05. 5. 6><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협조 요청

우리 ○○지부(○○출장소○○지소)의 년 법구 제 호 의뢰자의 _____사건의 소송수행상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하오니 20 . . . 까지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협조요청사항

○ 특기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수임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mm×297mm(모조지 70g/㎡)

[별지 제9호 서식]

조 사 기 간 연 장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년 법구 제 호 사 건 명 : 의 뢰 자 : 상 대 방 : 접수일자 :	승 인	불승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건개요

2. 조사기간 연장사유

3. 조사기간 연장기간

20 . . .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97. 12. 26><개정 '99. 7. 29><개정 '00. 1. 5><개정 '02. 6. 7><개정 '06. 6. 26><개정 '06. 12. 28><개정 '07. 9. 28><개정 '09. 7. 13><개정 '12. 9. 18.><개정 '15. 12. 30.><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조사보고 및 결정서(민사사건 등)

사건번호		접 수 일	
의 뢰 자		상 대 방	
사 건 명		신청금액	

조 사 내 용	(신청사실의 요지 기재 사실 외 추가 조사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 관할 확인 [ ] 이익충돌, 중복 확인		
구조대상자		[ ] 무료	[ ] 일부무료 [ ] 유료 예납[ ], 예납유예 사유 있음 [ ]
승소가능성	승소가능금액 [ ]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조사담당직원 *(서명 또는 인)*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조사담당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송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결 정	소송구조	공 증 소송구조	소송전 구 조	구조기각	취 하	취하간주	이 송	이 송 정 보
내 용								문서번호 : 수 신 : 첨부서류 : 사건기록 일체 통지일자 :
결 재 및 배 당	구조부(팀)장		*0 0* 장		소송구조 제 호			
					수임변호사		담당직원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0 0* 지부(*0 0* 출장소 *0 0*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1호 서식]<신설 '06. 4. 28><개정 '07. 9. 28><개정 '09. 7. 13><개정 '12. 9. 18.><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0-1호 서식]

조사보고 및 결정서(민사사건 등)

사건번호		접 수 일	
의 뢰 자		상 대 방	
사 건 명		신청금액	

조 사 내 용			
구조대상자		[ ] 무료	[ ] 일부무료 [ ] 유료 예납[ ], 예납유예 사유 있음 [ ]
승소가능성	승소가능금액 [ ]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법률구조위원 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송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통지일자 년 월 일

결 정	소송구조	공증 소송구조	소송전 구 조	구조기각	취 하	취하간주	이 송	이 송 정 보
내 용								문서번호 : 수 신 : 첨부서류 : 사건기록 일체 통지일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 출장소 ○○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 '06. 12. 28><개정 '12. 9. 18.>

<table>
<tr><td colspan="4" rowspan="2">구조중단결정서(민사 등)</td><td rowspan="2">결
재</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3"></td><td colspan="2">사 건 명</td><td colspan="2"></td></tr>
<tr><td>의 뢰 자</td><td></td><td>직 업</td><td></td><td colspan="2">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상 대 방</td><td></td><td>직 업</td><td></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8">사건개요</td></tr>
<tr><td colspan="8">구조중단에 관한 의견</td></tr>
<tr><td colspan="8">이 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조중단결정 함이 상당함

20 . . .

수임변호사 (인)</td></tr>
<tr><td colspan="3">구조중단결정일자</td><td colspan="3">결정통지일자</td><td colspan="2">인</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0-3호 서식]<신설 '24. 5. 24>

<table>
<tr><td colspan="4">구 조 기 각 이 유 서</td></tr>
<tr><td>사 건 번 호</td><td></td><td>사 건 명</td><td></td></tr>
<tr><td>의 뢰 자</td><td></td><td>상 대 방</td><td></td></tr>
<tr><td colspan="4">신청 사실의 요지</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구조기각 이유</td></tr>
<tr><td colspan="2">구조대상자 또는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td><td colspan="2"></td></tr>
<tr><td>근거</td><td colspan="3">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제0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5조 제2항 제0호</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1. 9. 30.>

법 률 구 조 신 청 취 하 서

년 법구 제 호

의뢰자

위 본인이 를 상대로 귀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취하합니다.

○ 취하사유 :

20 년 월 일

위 취하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지소)장 귀하

< 법원제출서류 >

소취하서	항소취하서	상고취하서	사임계	기타	지부장 등 확인서명란

※ 법률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제23조에 따라 반드시 수임변호사가 취하사유를 확인한 후, 법원제출서류 해당란에 서명(기타의 경우 서류명칭도 기재)하고 지부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00. 1. 5><개정 ’00. 6. 21><삭제 ’02. 6. 7>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00. 6. 21><삭제 ‘07. 9. 28>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이 송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가 당 공단 ○○지부 (○○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는 사유로 인하여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로 이송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참고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 신청한 위 사건은 소송구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귀하는 인장을 지참하시고 20 . . . (오전/오후) 시까지 당 에 출석하여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담당자 ○ ○ ○ (전화 :)에게 미리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5-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0. 5. 19.><개정 ’15. 4. 8.>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 신청한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귀하의 신청은 20 . . . 자로 사유로 구조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각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귀하가 우리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효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정해진 기일내에 소제기, 준비서면 제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5-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5. 4. 8>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 신청한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귀하의 신청은 20 . . . 자로 사유로 구조승인신청이 불승인되어 구조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당 공단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5-3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5. 4. 8.>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조중단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귀하의 신청은 20 . . . 자로 사유로 구조중단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당 공단의 소송대리 등 일체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중단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거나,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4. 11. 17><개정 '06. 12. 28><개정 '09. 7. 13><개정 '12. 9. 18.>

(전면)

민 사 사 건 등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구조신청금액		
의 뢰 자	주 소	(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직 장	(전화)
상 대 방	주 소	(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직 장	(전화)

위 사건에 대한 귀 공단 ○○지부(○○출장소○○지부)의 구조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사유(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20 . . .

신 청 인 의뢰자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인)

※ 유의사항

귀하가 우리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효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정해진 기일내에 소제기, 준비서면 제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6호 서식]

(후면)

이 의 신 청 사 유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장

경 유

제 목 이의신청사건 기록송부

당 에서 구조기각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의뢰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동 사건기록을 송부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결정일자	소가	비고
			의뢰자	상대방			

첨 부 : 사건기록 책.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00. 6. 21><삭제 '02. 6. 7>

[별지 제18-1호 서식]<삭제 '06. 12. 28>

[별지 제18-2호 서식]<신설 '00. 6. 21><개정 '12. 9. 18.><개정 '18.10.30.>

<table>
<tr><td rowspan="2">대한법률
구조공단</td><td></td><td rowspan="2">법 률 구 조
년 법구 제 호</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조 사 자</td><td></td><td>20 . . .</td><td>국선대리
선정사건</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국 선 대 리 인 선 정 보 고 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같은 규칙 시행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td></tr>
<tr><td>사 건 명</td><td colspan="2"></td><td>헌법재판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td><td>국선대리인
선정일자</td><td></td></tr>
<tr><td rowspan="2">청 구 인</td><td>주 소</td><td colspan="4">(전화 :)</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직 업</td><td></td></tr>
<tr><td rowspan="2">피청구인</td><td>주 소</td><td colspan="4">(전화 :)</td></tr>
<tr><td>처분청 또는
공권력기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1. 청구취지 · 청구이유</td></tr>
<tr><td colspan="6">첨 부 : 국선대리인선정결정서 1부.

20 . . .

보고자 국선대리변호사(공익법무관) (인)</td></tr>
</table>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18-3호 서식]<신설 '00. 6. 21><삭제 '07. 9. 28>
[별지 제18-4호 서식]<신설 '02. 10. 4><삭제 '07. 9. 28>
[별지 제19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 목 구조승인신청

당 에서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구조결정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조결정금액	결정일자	소 가	비 고
			의뢰자	상대방				

첨 부 : 1. 법률구조신청서 1부.
2. 소송구조결정서 및 조사의견서 사본 각 1부.
3. 구조요건 증빙자료 부.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

민 사 사 건 등 승 인 신 청 사 건 부

일련번호	접수일자	원접수기관명칭 및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구조신청금액(원)	원 결 정			승 인 결 정		비 고
			의뢰자	상대방			일 자	결정내용	결정소가	일 자	결정내용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

민 사 사 건 등 이 의 신 청 사 건 부

일련번호	접수일자	원접수기관명칭 및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구조신청금액(원)	원 결 정			재 심 결 정		비 고
			의뢰자	상대방			일 자	결정내용	결정소가	일 자	결정내용	

297㎜×210㎜(모조지 70g／㎡)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

<table>
<tr><td colspan="6">승 인 신 청 사 건 검 토 보 고 서

20 . . .
상임위원 (인)</td></tr>
<tr><td rowspan="2">사건번호</td><td>본 부</td><td>년 승인 제 호</td><td>사 건 명</td><td colspan="2"></td></tr>
<tr><td>지부등</td><td>년 법구 제 호</td><td>구조신청
금 액</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당 사 자</td><td>의뢰자</td><td colspan="4">직업 : 생년월일 :</td></tr>
<tr><td>상대방</td><td colspan="4">직업 :</td></tr>
<tr><td colspan="6">1. 사건개요</td></tr>
<tr><td colspan="6">2. 원결정요지
○ 주 문 :
○ 이 유 :</td></tr>
<tr><td colspan="6">3. 조사결과</td></tr>
<tr><td colspan="6">4. 승소가능금액</td></tr>
<tr><td colspan="6">5. 무료대상자 여부</td></tr>
<tr><td colspan="6">6. 상임위원 의견</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3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

<table>
<tr><td colspan="6">상 임 위 원 의 견 서

20 . . .
상임위원 (인)</td></tr>
<tr><td rowspan="2">사건번호</td><td>본 부</td><td>년 이의 제 호</td><td>사 건 명</td><td colspan="2"></td></tr>
<tr><td>지부등</td><td>년 법구 제 호</td><td>구조신청
금 액</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당 사 자</td><td>의뢰자</td><td colspan="4">직업 : 생년월일 :</td></tr>
<tr><td>상대방</td><td colspan="4">직업 :</td></tr>
<tr><td colspan="6">1. 사건개요</td></tr>
<tr><td colspan="6">2. 원결정요지
○ 주 문 :
○ 이 유 :</td></tr>
<tr><td colspan="6">3. 조사결과</td></tr>
<tr><td colspan="6">4. 승소가능금액</td></tr>
<tr><td colspan="6">5. 무료대상자 여부</td></tr>
<tr><td colspan="6">6. 상임위원 의견</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4호 서식]

결 정 서

사 건 번 호	공 단	년 이의 제 호	사건명	
	지 부 등	년 법구 제 호		
의 뢰 자		상 대 방		
원 결 정				
무료대상자여부				

○ 주 문

○ 이 유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24-1호 서식]<신설 '08. 12. 30>

결 정 서

사 건 번 호	공 단	년 이의 제 호	사건명	
	지 부 등	년 법구 제 호		
의 뢰 자		상 대 방		
원 결 정				
무료대상자여부				

○ 주 문

○ 이 유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장

210㎜×297㎜(모조지70g/㎡)

[별지 제25호 서식]

결 정 서

사 건 번 호	공 단	년 승인 제 호	사건명	
	지 부 등	년 법구 제 호		
의 뢰 자		상 대 방		
원 결 정				
무료대상자여부				

○ 주 문

○ 이 유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6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결 정 통 지 서

(이 의 신 청 사 건)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인장을 지참하시고 20 . . . (오전/오후) 시까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출석하여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6-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5. 4. 8.>

결 정 통 지 서

(이 의 신 청 사 건)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의신청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6-2호 서식]<신설 '08. 12. 30><개정 '15. 4. 8.>

결 정 통 지 서

(이 의 신 청 사 건)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의신청은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7호 서식]<개정 '98. 3. 25><개정 '00. 6. 21><개정 '02. 6. 7><개정 '02. 10. 4><개정 '03. 12. 30><개정 '07. 3. 13><개정 '10. 6. 29.><개정 '12. 9. 18.><개정 '18.12.28.>

민 사 사 건 등 소 송 구 조 사 건 관 리 카 드

□ 기 본 정 보

소구번호						
의 뢰 자	성 명		휴대전화		전 화	
	주 소				e-mail	
	생년월일		계좌번호			
상 대 방	성 명		휴대전화		전 화	
	주 소				e-mail	
	생년월일		계좌번호			
사 건 요 지						
기록보존번호						

□ 담 당 자

사건번호	사건명	대상자	유료,무료	접수자	조사자	수 임 변호사	종 결 변호사	송무담당	송무담당	징수결정 담 당 자	판 결 문 교부일자	수령자

□ 진 행 관 리

사건번호	접수일	구조결정일자	결정금액	소제기일자	청구금액	법 원	사건번호	판 결 문 수령일자	종료보고일자	세부종결 구 분

□ 예납·승소·환급금

구 분	일 자	금 액	이 자	정산일자	비용상환	환급금액
예 납 금						
승 소 금						
환 급 금						

□ 지 출

사 건 번 호	일 자	금 액	적 요
소 구 합 계			
사 건 합 계			

□ 의뢰자 상환

사건번호	일 자	상 환 결 정 액			상 환 액			면 제 액			미 상 환 액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구합계													
사건합계													

□ 상대방 상환 및 법원 회수

사건번호	일 자	상환결정액			상대방상환및법원회수액			상대방상환불가액			상대방상환진행중액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계
소구합계													
사건합계													

□ 독 촉

일 자	내 용

[별지 제27-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2. 6. 7><삭제 '02. 10. 4>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7. 5. 23><개정 '09. 7. 13><개정 '15.12.30.>

(전면)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계약서

의뢰자를 "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계약일자	확 인

나. 을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정하여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갑은 을이 선정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의 규범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이 우선 부담한다. 다만, 을은 의뢰사건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한 예납유예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받을 수 있다.

나. 갑은 소송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을이 대납한 소송비용과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를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 갑은 소송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변제받은 때에는 을에게 소송비용 등을 우선 상환하여야 하고, 을이 갑을 대리하여 판결금 등을 변제받은 때에는 을은 위 금원을 갑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라. 갑이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갑은 을이 직접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4. 10. 1><개정 '06. 12. 28><개정 '07. 5. 23><개정 '09. 7. 13><개정 '15. 12. 30.><개정 '22. 9. 27.>

(후면)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배신적인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결
  (2) 갑이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의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3) 갑이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4) 갑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6) 갑이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나. 을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6. 자료의 유치, 폐기 및 활용
 가.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판결문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나.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문서사무등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을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장(○○출장소장○○지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8-1호 서식]<신설 02. 10. 4><삭제 '03. 12. 30>
[별지 제28-2호 서식]<신설 06. 1. 17><개정 '06. 12. 28><개정 '07. 5. 23><개정 '09. 7. 13><개정 '14. 2. 26><개정 '15.12.30.><개정 '22. 9. 27.>

(전면)

소송구조 지정 사건 법률구조계약서

의뢰자를 "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법원이 을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갑은 을에게 (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나. 을의 위임사무는 소송구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용, 기각 등)시 종료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4호 이외의 민사사건 등에 대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갑은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을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의뢰사건이 규칙에서 정한 예납유예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받을 수 있다.

4.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갑이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2) 갑이 을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4) 갑이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나. 을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5. 자료의 유치, 폐기 및 활용
 가.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위임사 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판결문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나.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문서사 무등 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을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8-2호 서식] <개정 '09. 7. 13>

(후면)

6.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장(○○출장소장○○지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9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4. 10. 1><개정 '07. 5. 23><개정 '09. 7. 13><개정 '15.12.30>

(전면)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계약서

의뢰자를 "갑", 법률구조위원을 "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병"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 건 명	계약일자	확 인

나. 갑은 을에게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갑과 병의 진의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수임변호사로서 부적임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병은 임의로 을을 해임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가. 갑과 을은 소송비용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1) 병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2) 병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며,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사건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산정·지급한다.

(3) 착수금은 구조결정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구조결정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정한 소가산정방법을 준용하며, 승소가액 및 성공보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 제30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을은 소송수행 중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병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은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청구취지가 확장된 때에는 을은 병에게 착수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가 감축된 때에는 병은 을에게 일부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은 소송종료시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 병은 의뢰사건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한 예납유예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받을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9호 서식]<개정 '07. 5. 23><개정 '13.09.01.><개정'15.1230><개정 '22. 9. 27.>
<개정 '24. 7. 8>

(중면)

라. 갑은 소송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병이 대납한 소송비용과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를 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마. 갑이 소송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변제받은 때에는 병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바. 을은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임의이행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받아야 하고, 갑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이행을 받기로 약정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수령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전액을 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 갑이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갑은 즉시 병이 직접 갑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병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을에 대하여 위임자로서 배신적인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결

(2) 갑이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의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3) 갑이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4) 갑이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6) 갑이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나. 병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6. 자료의 유치, 폐기 및 활용

가. 병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판결문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나. 병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기록물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병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06. 12. 28><개정 '07. 5. 23><개정 '09. 7. 13>

(후면)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병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법률구조위원 수임변호사 성명 (인)

주소

병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장(○○출장소장○○지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과 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0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3. 12. 30><개정 '09. 7. 13><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고(신 청 인)	
피고(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수 임 인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위임 사항	1.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참가, 탈퇴 4. 복대리인의 선임 5.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6. 승소금, 화해금 및 목적물의 수령 7.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공탁금출급청구 및 수령행위 일체 9. 가압류 관련 공탁금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 10.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및 동 금원의 수령 12.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위 임 인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 지부(○ ○ 출장소 ○ ○ 지소)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0-1호 서식]<신설 '06. 1. 17><개정 '09. 7. 13><개정 '14. 2. 26>

위 임 장

신청인(채무자)

위 신청인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 ○ ○ ○ (주소 :)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1.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 제출
2. 소장, 각종 신청서 작성, 제출
3.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서 작성, 제출

20 . . .

위임인 신청인(채무자) (인)

주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1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3. 12. 30><개정 '09. 7. 13><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고(신 청 인)	
피고(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00출장소00지소) 법률구조위원인 00 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수 임 인	변 호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위임 사항	1.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참가, 탈퇴 4. 복대리인의 선임 5.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6. 승소금, 화해금 및 목적물의 수령 7.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공탁금출급청구 및 수령행위 일체 9. 가압류 관련 공탁금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 10.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및 동 금원의 수령 12.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년 월 일

위 임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 지부(○ ○ 출장소 ○ ○ 지소)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 서식]<개정 '05. 7. 11>

제 소 기 간 연 장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년 법구 제 호
사 건 명 :	
의 뢰 자 :	
상 대 방 :	
구조결정일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2. 제소지연사유

3. 향후 처리대책 및 근거

4. 제소기간 연장기간

20 . . .

수임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1호 서식]<삭제 '02. 6. 7>
[별지 제32-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3. 1. 17><삭제 '07. 1. 30>
[별지 제32-3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민사사건등 소송진행상황보고

		정리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전 회 보 고	20 . . . (구조 ○○○ -)		
의 뢰 자		상 대 방	
관할법원 등		법원등사건번호	
수임변호사		심 급	심
소송진행상황			

첨 부 :

210㎜×279㎜(모조지 70g/㎡)

[별지 제32-4호 서식]<신설 '05. 1. 5><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민사사건등 소송종료보고

정리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의 뢰 자		법원사건번호	
소송종료일자		판결등내용	
상소마감일자		수임변호사 (선정대리인)	
판결등요지			
상소여부등에 대한 의견			
패 소 원 인			
참 고 사 항			

첨 부 : 판결문 사본 등 1부.

210㎜×279㎜(모조지 70g／㎡)

※ 패소원인란에 패소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2-5호 서식]<신설 '00. 9. 28><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

수 신 : 20 . . .

참 조 :

제 목 : 소송진행상황 통지

귀하로부터 의뢰 받은 20 법구 제 호 사건의 소송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원(재판부)		의 뢰 자	
사 건 번 호		상 대 방	
사 건 명		금회기일	
		차회기일	

1. 진행상황

☞ 의뢰자측(주장사실 및 변론내용)

☞ 상대방측(주장사실 및 답변내용)

☞ 재 판 부

2. 첨부서류

3. 협조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수임변호사(공익법무관)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6호 서식]<신설 '00. 9. 28><신설 10.5.6.>

사 건 진 행 내 역 부

소구 번호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사건명
의뢰자		상대방	

사건 번호	통지 일자	통지 시간	담당자	통지 방법	수·발신	대상자	성명	통지 내용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7호 서식]<신설 '05. 8. 18>

면 담 (통 화)일 지

연월일시	면 담 · 통 화	면담대상자 · 통화대상자	진술·고지내용 및 제출서류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8호 서식](갑)<신설 '05. 8. 18><개정 '05. 12. 5>

소 송 사 건 진 행 경 과 서

사건번호 (소구번호)			사 건 명		
의 뢰 자		상 대 방		법원사건번호	

연번	기 일	의 뢰 자	상 대 방	조 치 사 항 (준 비)	비 고 (차회기일)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8호 서식](을)

소 송 사 건 진 행 경 과 서

연번	기 일	의 뢰 자	상 대 방	조 치 사 항 (준 비)	비 고 (차회기일)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2-9호 서식]<삭제 '16. 3. 16.>

조사 및 제소지연사건 현황

[20 년 월분]

○ ○ 지부(출장소○○지소)

조 사 지 연 사 건							
번호	법구번호	의뢰자	사건명	접수일자	지연기간	지 연 사 유	비 고
제 소 지 연 사 건							
번호	법구번호 소구번호	의뢰자	사건명	소송구조 결정일자	지연기간	지 연 사 유	비 고

* 지연기간 : 월중에 조사(제소)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자 기준, 월중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3호 서식]<개정 '98. 3. 25><개정 '00. 6. 21><개정 '02. 6. 7><개정 '05. 5. 6><개정 '09. 7. 13>

소 송 비 용 상 환 결 정 서

결재				

사 건 번 호		소 구 번 호	
의 뢰 자		사 건 명	
직 업		법원사건번호	

위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이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기로 결정한다.

항 목		금 액	비 고
소송비용	본 안 비 용		
	보 전 비 용		
	집 행 비 용		
	기 타 비 용		
	소 계		
변호사보수			
합 계			

변호사보수 산정내역		협조	수임변호사

년 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3-1호 서식]<신설 '02. 10. 4><개정 '06. 6. 26><개정 '09. 7. 13><개정 '15. 4. 8>

<삭제>

[별지 제34호 서식]<개정 '98. 3. 25><개정 '00. 6. 21><개정 '02. 6. 7><개정 '05. 5. 6><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문서번호 :
수 신 :
주 소 :
제 목 : 소송비용상환통지

사건번호	
의 뢰 자	

위 사건의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 공단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을 상환받기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납부할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한 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시고 위 사건의 판결문정본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할 금액

상환결정금액(A)			기납부금액(B)	납부할금액(A-B)
민사소송비용	본안비용			
	보전비용			
	집행비용			
	기타비용			
	소 계			
변호사보수				
합 계				

2. 무통장입금 지정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필히 법률구조신청한 위 의뢰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고, 무통장입금증이 소송비용상환 영수증을 대신하오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입금 후에는 반드시 입금 사실을 통지하여 주십시오)

연락전화번호 : 담 당 자 :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mm×297mm(모조지 70g/㎡)

[별지 제34-1호 서식]<신설 '02. 10. 4><개정 '03. 1. 17><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변호사보수청구통지

1. ○○지방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구조자 ○○○을(를) 위하여 우리 공단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 ○○○가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되어 귀하 상대로 ○○지방법원 20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패소자인 귀하에게 소송구조변호사의 변호사보수 중 귀하의 부담부분 금 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20 . . . 우리 공단(예금계좌 000-000-000)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통지합니다.

2. 만약 위 금액을 임의 납부치 아니할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5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3. 1. 17><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승소금에 대한 변제 최고

1. 당 가 의뢰자 로부터 위임을 받아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청구사건에서 금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동 금액과 소송비용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또는 변호사 에게 조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이미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다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만약 위 금액을 임의변제하지 않으면 법절차에 따라 민사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6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8. 12. 30><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 목 소송비용상환면제신청

당 지부(○○출장소○○지소) 년 법구 제 호 외 건의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면제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판결 등 내용	소 송 비 용		면제신청사유
		의뢰자	상대방		총 액	면제금액	
1							
2							
3							
4							
.							
.							
.							
.							
.							

첨 부 : 사건기록 책.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7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8. 12. 30>

소 송 비 용 상 환 면 제 결 정 서

소 구 번 호			
사 건 번 호	년 법구 제 호	사 건 명	
의 뢰 자		상 대 방	

○ 면제결정내역

항 목	1 심	2 심	3 심	계
소 송 비 용				
변호사보수				
면제결정총액				
면 제 이 유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1조에 의거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하기로 결정함

2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7-1호 서식]<신설 '02. 10. 4><개정 '06. 6. 26><개정 '09. 7. 13><개정 '15. 4. 8.>

변호사보수납부면제결정서	담당자	○○팀장	구조부장	지부(출장소,지소)장

사건번호	년 법구 제 호	사 건 명	
의 뢰 자		상 대 방	
법원사건번호		판 결 내 용	

1.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
   ○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
   ○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
   ○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 :
2. 납부면제신청 사유

3. 수임변호사(공익법무관)의 의견
   위 사건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 금 원은 ( ) 사유로 청구불가하므로 주문과 같이 납부면제결정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임변호사(공익법무관) ○ ○ ○ (인)

4. 승인여부
   위 사건 판결에 따른 패소자인 상대방 0 0 0 에게 상대로 청구할 변호사보수 금 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0 . . .

승 인	불 승 인
(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귀하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7-2호 서식]<신설 '08. 12. 30>

소송비용상환면제 심의내역서

(단위 : 원)

순번	기관별	의뢰자	사건번호	사건명	상환결정일자	상환결정금액	상환액	면제신청금액		계	심의내역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합계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8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문서번호 20 . . .

수 신

제 목 소송비용상환면제통지

1. 귀하가 의뢰한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년 법구제 호 법률구조신청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당 공단이 지급한 소송비용 중 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판결문 등 정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와 인장을 지참하고 미리 연락을 취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39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0. 9. 28><개정 '02. 6. 7><개정 '03. 12. 30><개정 15. 4. 8.><삭제 19. 10. 18.>

[별지 제39-1호 서식]<신설 '02. 10. 4><개정 '09. 7. 13><개정 '15. 4. 8><개정 '15. 12. 30.>

면 접 상 담 대 기 표

20 . . . No.

상담사건명			
성 명		전화번호	
		통 신 사	SKT, LG, KT

1. 법률상담은 소속직원이 주로 하고 있으며, 공익법무관 또는 자원봉사자(사법연수원생)가 상담하기도 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상담은 상담직원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상담은 방문(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인터넷)상담, 서신상담이 있으며, 방문상담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라며 예약하지 않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상담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방문상담의 예약과 취소는 인터넷, 모바일 앱, 132전화, 방문시에 할 수 있으며 예약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5.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법률상담사례 및 법률서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불법·탈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문의나 비방,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합니다."

부패신고는 gamsa@klac.or.kr 02)3440-9421~4

210㎜×148㎜(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3. 12. 30><삭제 19. 10. 18.>

[별지 제4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3. 12. 30><개정 '15. 4. 8.>

법 률 상 담 기 록 부(서신)

접수번호:

접수 및 상담실시현황

접수일자		상 담 자		내용분류	
상담사건명		상담시간		상담방법	

의뢰자 및 상대방

의뢰자	주 소				상담회수	
	성 명		우편번호	-	성 별	○ 남자 ○ 여자
	직 업		전 화			
상대방	주 소					
	성 명		우편번호	-	성 별	○ 남자 ○ 여자
	직 업		전 화			

상담내역

상담내용	
답변내용	

처리사후확인

상담처리		처리일자		확인자	
확인내용				상대방	

210㎜×297㎜

[별지 제41-1호 서식]<개정 '99. 7. 29><삭제 '03. 12. 30>

[별지 제4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5. 12. 5><개정 '06. 12. 28><개정 '08. 7. 2><개정 '09. 7. 13><개정 '11. 9. 30.><개정 '12. 3. 27.><개정'13.9.1.><개정 '15. 12. 30.><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

사건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15일 (연장 가능)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사 건 명 (죄 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구속 · 기소, 가법송치일자		공판 · 선고 일자	
의 뢰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E-mail		
	송달장소					전 화		
	직 업 (대상자)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신 병	[ ] 구 속 [ ] 불구속	수용기관			수 용 번호		
대리인 또는 연락대상 가족,친지	성 명	(의뢰자와의 관계 :)				[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 전자우편 수신동의		
	주 소					전 화 E-mail		
	송달장소					전 화		
상대방 (피해자 또는 가해자)	성 명					전 화 E-mail		
신청사실의 요 지	(공소사실, 유리한 증인 등 증거, 변론요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대상자 관련 사건 관련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접수확인	접수담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조사담당 직 원
		전 결		조사담당변호사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2-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11. 9. 30.><개정 '12. 3. 27.><개정 '12. 9. 18.>

<table>
<tr><td rowspan="2">대한법률
구조공단</td><td></td><td colspan="2" rowspan="2">법 률 구 조
년 법구 국 제 호</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조 사 자</td><td></td><td>20 . . .</td><td colspan="2">국선변호
선정사건</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국 선 변 호 인 선 정 (지 정) 보 고 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5조 제1항, 같은 규칙 시행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td></tr>
<tr><td>죄 명</td><td></td><td>수사기관 또는
법원(검사)
명칭 및
사건번호</td><td></td><td>구속·기소,
가법송치일자</td><td></td><td>공판·선고
일 자</td><td></td></tr>
<tr><td rowspan="3">피 고 인
(피의자,
피해자)</td><td>주 거</td><td colspan="5">(전화 :)</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직 업</td><td></td></tr>
<tr><td>신 병</td><td colspan="2">□구속 □불구속</td><td>수용기관</td><td></td><td>수용번호</td><td></td></tr>
<tr><td rowspan="2">대리인 또는
연락대상
가족, 친지</td><td>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피고인·피해자·
피해자와의 관계</td><td></td></tr>
<tr><td colspan="7">1. 국선변호인선정(지정) 법원(검사)명 :
2. 국선변호인 선정(지정)일자 :
3.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td></tr>
<tr><td colspan="7">첨 부 : 국선변호인선정(지정)결정서 1부.

20 . . .
보고자 국선선정(지정) 변호인 (인)</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42-2호 서식]<신설 '14.2.26.><개정 '18.12.28.><개정 '19.9.2.>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42-2호 서식]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 및 결정서(상소심사건 등)

사건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15일 (연장 가능)

사 건 명 (죄 명)		최초 사건번호 (공 단)	
상소심 등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조사담당자	
불변기간 확인	등록[ ],해당 없음 [ ]	구조대상자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의 뢰 자		의뢰자 신병	[ ] 구 속 [ ] 불구속
신청사실의 요 지	상소기간 만료일자 :		상소이유서 제출[ ], 미제출[ ]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수임변호사(조사담당변호사) 의견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수임변호사(조사담당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송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접 수	고객지원부(팀)장	0 0 장	소송구조	구조기각	취하	이송	기 타	이 송 정 보
확 인	전 결							문서번호 : 수 신 :
결 재 및 배 당	구조부(팀)장	0 0 장	소송구조 제 호					첨부서류 : 사건기록 일체
			수임변호사					통지일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0 0 지부(0 0 출장소 0 0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3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1. 8. 6><개정 '02. 6. 7><개정 '12. 3. 27.><개정 '12. 9. 18.><개정 '15. 12. 30.>

형 사 사 건 등 법 률 구 조 사 건 부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의뢰자(피고인·피의자·피해자)	의뢰자주소			수사기관 또는 공판법원	원결정일자	원결정내용	조사자	소구번호
			생년월일	직업	죄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사건번호	재심결정일자	재심결정내용	수임변호사	국선변호료
			구속연월일	기소, 가법 송치일자	수용기관	수용번호	공판연월일	판결선고일	판결요지	비고

364mm× 257mm(모조지180g)

[별지 제44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02. 6. 7><개정 '06. 6. 26><개정 '06. 12. 28><개정 '07. 9. 28><개정 '09. 7. 13><개정 '12. 3. 27.><개정 '12. 9. 18.><개정 '15. 12. 30.><개정 '18.12.28.>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조사보고 및 결정서(형사사건 등)

사건번호		접 수 일	
의 뢰 자		사 건 명 (죄 명)	
구속 · 기소, 가법송치일자		공판 · 선 고 일자	

조 사 내 용	(신청사실의 요지 기재 사실 외 추가 조사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 이익충돌, 중복 확인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조사담당직원 *(서명 또는 인)*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함이 상당함.

년 월 일

조사담당변호사 *(서명 또는 인)*

소송구조 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년 월 일

결 정	소송구조	구조기각	취 하	취하간주	이 송	기 타	이 송 정 보
내 용							문서번호 : 수 신 : 첨부서류 : 사건기록 일체 통지일자 :

결 재 및 배 당	구조부(팀)장	*0 0* 장	소송구조 제 호		담당직원	*(인)*
			수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0 0* 지부(*0 0* 출장소 *0 0* 지소)장 [직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4-1호 서식]<신설 ’06. 12. 28><개정 ‘12. 3. 27.><개정 ’12. 9. 18.><개정 ‘15.12.30.>

<table>
<tr><td colspan="5">구조중단결정서(형사사건등)</td><td rowspan="2">결
재</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3"></td><td>사건명</td><td colspan="4"></td></tr>
<tr><td>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td><td></td><td>직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td><td></td><td>신병</td><td></td><td>수용기관 및
수용번호</td><td></td><td>대리인
(보호자)</td><td></td><td>관계</td><td></td></tr>
<tr><td>구조대상자유형</td><td colspan="2"></td><td>기소일자</td><td colspan="2"></td><td>공판기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10">사건개요</td></tr>
<tr><td colspan="10">구조중단에 관한 의견</td></tr>
<tr><td colspan="10">이 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구조중단결정 함이 상당함

20 . . .

수임변호사 (인)</td></tr>
<tr><td colspan="3">구조중단결정일자</td><td colspan="4">결정통지일자</td><td colspan="3">인</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td><td colspan="3"></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45호 서식]<개정 '00. 1. 5><개정 '00. 6. 21><삭제 '02. 6. 7>

[별지 제45-1호 서식] <개정 '12. 3. 27.><개정 '12. 9. 18.>

<table>
<tr><td colspan="7">조 사 담 당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의 견 서</td></tr>
<tr><td>사건
번호</td><td>○○지부,
○○출장소</td><td>년 법구 제 호</td><td>죄 명</td><td></td><td>신 병</td><td>□ 구 속
□ 불구속</td></tr>
<tr><td colspan="2">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td><td>년 제 호</td><td>기소일자</td><td></td><td>공판일자</td><td></td></tr>
<tr><td colspan="2">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td><td></td><td>직 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대 리 인</td><td></td><td>직 업</td><td></td><td>의뢰자와의
관 계</td><td></td></tr>
<tr><td colspan="2">사 건 개 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구조요건에
대한 조사결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조사담당변호사
(공익법무관)
의 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20 . . .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 (인)</td></tr>
</table>

[별지 제45-2호 서식] <개정 '12. 3. 27.><개정 '15.12.30.>

본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

1. 심사안건

사건번호	본 부	년 접수 제 호	죄 명	
	○○지부, ○○출장소	년 접수 제 호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대리인	

2. 사건개요

3. 조사담당변호사 의견

4. 심사위원 의견

구 분	소 송 구 조	구 조 기 각
위 원 장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5. 심사결과

본 사건은 소송구조/구조기각 함이 상당함

심사일자 . . .

[별지 제45-3호 서식] <개정 '12. 3. 27.><개정 '15. 12. 30.>

OO 지부 형사사건등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의서

1. 심사안건

사건번호	OO지부, OO출장소	년 접수 제 호	죄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의 뢰 자 (피고인 · 피의자 · 피해자)			대리인	

2. 사건개요

3. 조사담당변호사 의견

4. 심사위원 의견

구 분	소 송 구 조	구 조 기 각	본부심사의뢰
위 원 장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5. 심사결과

본 사건은 소송구조/구조기각/본부심사의뢰 함이 상당함

심사일자 . . .

[별지 제46호 서식]<개정 '99. 1. 19><개정 '99. 7. 29><개정 '00. 6. 21><삭제 '07. 9. 28>

[별지 제47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9. 7. 13><개정 ‘12. 3. 27.><개정 ’12. 9. 18.>

이 송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 년 법구 제 호

수사기관 또는 법원 명칭 및 사건번호 :

의 뢰 자 :

(피고인·피의자·피해자)

생년월일 :

대 리 인 :

신 병 : □ 구속 □불구속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 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당 공단 ○○지부(○○출장소○○지소)로 이송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송사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48호 서식]<개정 ’99. 7. 29><삭제 ’02. 6. 7>

[별지 제48-1호 서식]<개정 ’99. 7. 29><삭제 ‘06. 12. 28>

[별지 제48-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삭제 ‘07. 9. 28>

[별지 제49호 서식]<삭제 ’00. 1. 5>

[별지 제50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형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에 대하여 형사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은 소송구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인장을 지참하시고 20 . . . (오전/오후) 시까지 당 에 출석하여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담당자 ○ ○ ○ (전화 :)에게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0-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10. 5. 19>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형 제 호

수 신

(주소 :)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에 형사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하의 법률구조신청은 사유로 기각결정 되었는 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사장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신청, 다른 변호인의 선임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귀하가 우리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별도로 기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0-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형 제 호

수 신

(주소 :)

귀하가 당 공단 ○○지부(○○출장소)에 형사법률구조신청한 위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조중단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하의 신청은 사유로 구조중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변호를 비롯한 당 공단의 법적지원이 모두 중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신청, 다른 변호인의 선임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개정 '06. 12. 28><개정 '12. 3. 27.><개정 '15. 12. 30.>

(전면)

형 사 사 건 등 이 의 신 청 서

사 건 번 호		죄 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상기 사건에 대한 귀 공단의 구조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4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사유(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20 . . .

신청인 위 의뢰자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인)

※ 유의사항

귀하가 우리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1호 서식]

(후면)

이 의 신 청 사 유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개정 '00. 6. 21><개정 '12. 3. 2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경 유

제 목 이의신청사건 송부

형사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구조기각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자(피고인·피의자·피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동 사건의 구조요건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죄명	결정일자	신병	비고
		의뢰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대리인				

붙 임 : 이의신청서 및 구조요건 등 관련자료 부. 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3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6. 6. 26><개정 '12. 3. 27.><개정 '15. 12. 30.>

형 사 사 건 등 이 의 신 청 사 건 부

일련번호	접수일자	원접수기관 명칭 및 사건번호	신청인		죄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신병	원결정		재심결정		확인		비고
			의뢰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대리인				일자	결정내용	일자	결정내용	담당	팀장	

297㎜×210㎜(모조지 180g/㎡)

[별지 제54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개정 '12. 3. 27.><개정 '12. 9. 18.>

<table>
<tr><td colspan="7">상 임 위 원 의 견 서</td></tr>
<tr><td rowspan="2">사건
번호</td><td>본 부</td><td>년 이의 제 호</td><td rowspan="2">죄 명</td><td rowspan="2"></td><td rowspan="2">신 병</td><td rowspan="2">□ 구 속
□ 불구속</td></tr>
<tr><td>지부 등</td><td>년 법구 제 호</td></tr>
<tr><td colspan="2">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td><td>년 제 호</td><td>기소일자</td><td></td><td>공판일자</td><td></td></tr>
<tr><td colspan="2">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td><td></td><td>직 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colspan="2">대 리 인</td><td></td><td>직 업</td><td></td><td>의뢰자와의
관 계</td><td></td></tr>
<tr><td colspan="2">사 건 개 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원 결 정 요 지</td><td colspan="5">○ 이 유</td></tr>
<tr><td colspan="2">구조요건에
대한 조사결과</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상 임 위 원
의 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20 . . .

상임위원 (인)</td></tr>
</table>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5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12. 3. 27.>

결 정 서

사 건 번 호	본 부	년 이의 제 호	죄 명	
	지부 등	년 법구 제 호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대 리 인		

○ 주 문

○ 이 유

20 . .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5-1호 서식]<신설 '02. 6. 29>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서면심사결정서

1. 심사안건

사건번호	공 단	년 이의 제 호	사건명	
	지부등	년 법구 ○○ 제 호	구조신청 금 액	
당 사 자	의뢰자	직업	생년월일	
	상대방	직업		

2. 사건개요

3. 원결정요지

4. 상임위원 의견

5. 심사위원 의견

구 분	구 조	기 각	보 류	사 유
위 원 장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상임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6. 구조여부 등 결정

결정일자 . . .

구 조	기 각	보 류	기 타

210mm×297mm(모조지 70g/㎡)

[별지 제56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

결 정 통 지 서

(이 의 신 청 사 건)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형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에 이의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인장을 지참하시고 20 . . . (오전/오후) 시까지 당 공단 ○○지부(○○출장소)에 출석하여 형사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일시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담당자 ○ ○ ○ (전화 :)에게 미리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6-1호 서식] <개정 '00. 6. 21>

결 정 통 지 서

(이 의 신 청 사 건)

문서번호 20 . . .

사건번호 년 법구 형 제 호

수 신

(주소 :)

1. 귀하가 당 공단에 이의신청한 위 사건에 대하여 구조기각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의신청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귀하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7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01. 8. 6><개정 '02. 6. 7><개정 '07. 3. 13><개정 '12. 3. 27.><개정 '12. 9. 18.><개정 15. 12. 30.>

형 사 사 건 등 소 송 구 조 사 건 관 리 카 드

소구번호						기록관리	일 자	구분(조사자, 수임변호사)	성 명	비 고
피 고 인 (피의자·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기타사항						기록보존번호				

사건번호	죄 명 (기타사건명표시)	신 병	구속일자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사기관	기소·가법 송치일자	비 고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소 송 진 행 상 황

사건번호	소송구조 결정일자	수 임 변호사	공판법원	법 원 사건번호	공판기일	선고일자 (종결일자)	요 지 (종결사유)	항소·상고일자	국선변호료	
									수납일자	지 급 액

297㎜x210㎜(모조지 180g/㎡)

[별지 제58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7. 5. 23><개정 '15. 12. 30.>

(전면)

형 사 사 건 등 법 률 구 조 계 약 서

의뢰자를 "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계약일자	확 인

나. 갑이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 을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정하여 형사변호를 수행하게 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형사변호에 필용한 재판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석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1) 갑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 허위일 때

(2) 소송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

나. 을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별지 제58호 서식]<개정 '22. 9. 27.>

(후면)

6. 자료의 폐기, 활용

가.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문서사무등관리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을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장(○○출장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9호 서식]<개정 ’00. 6. 21><개정 ‘07. 5. 23><개정 ’15. 12. 30.>

(전면)

형 사 사 건 등 법 률 구 조 계 약 서

의뢰자를 “갑”, 법률구조위원을 “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병”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수임의 범위

가. 갑은 을에게 아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계약일자	확 인

나. 갑이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 을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정하여 형사변호 를 수행하게 한다.

2. 성실의무 등

가. 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나. 을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변호인으로서 의무를 해태하는 등 수임변호사로서 부적임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병은 임의로 을을 해임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을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조회 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 등

가. 형사변호에 필용한 재판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석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이 형사변호 중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병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4. 상소심 등 구조절차

갑이 상소심 사건 등의 구조를 원할 때에는 별도로 상소심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서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59호 서식]<개정 '22. 9. 27.><개정 '24. 7. 8>

(후면)

5. 구조중단

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병은 갑에 대한 법률구조를 중단할 수 있다.

(1) 을의 해임

(2)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 허위일 때

(3) 기타 소송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

나. 병이 위 가항에 의하여 구조중단결정을 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구조중단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구조중단이 되면 을의 갑에 대한 위임사무는 종료되며, 소송진행 중인 때에는 수임변호사는 구조중단 즉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

6. 자료의 폐기, 활용

가. 병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소송기록 등을 문서사무등관리 규칙이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병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수임변호사가 위임사무에 따라 작성한 소장, 준비서면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을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기 타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한 제 규범에 따르고 적용규정이 없으면 을이 최종 결정한다.

20 . . .

갑 : 의뢰자 성명 (인)

주소

을 : 법률구조위원 수임변호사 성명 (인)

주소

병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인 ○○지부장(○○출장소장) (인)

유의사항 :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휴대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락 또는 통지한다. 갑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신청·고지한 연락처로 연락·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통화불능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과 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0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12. 3. 27.>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피의자 · 피해자)
사건번호 20 년 제 호
죄 명

위 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 ○ ○ (주소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무인)
주 소 :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 도 ○ ○ ○

위 변호인 변호사(공익법무관) (인)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법원 귀중

[별지 제60-1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6. 21><개정 ‘12. 3. 27.>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피의자 · 피해자)
사건번호 20 년 제 호
죄 명

위 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법률구조위원인 변호사 ○ ○ ○ (주소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연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무인)
주 소 :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 도 ○ ○ ○

위 변호인 변호사 (인)
전 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장 (인)
법원 귀중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1호 서식]<삭제 '06. 1. 17>

[별지 제61-1호 서식] <개정 '12. 3. 27.><개정 '15. 12. 30.>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형사사건등진행상황보고

		정리번호	
사 건 번 호		죄 명	
전 회 보 고	20 . . . (구조 ○ ○ ○ -)		
의 뢰 자 (피고인·피의자·피해자)		대 리 인	
관 할 법 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수 임 변 호 사		심 급	심
사건진행상황요지			
첨 부 :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1-2호 서식]<삭제 '02. 6. 7>

[별지 제62호 서식]<개정 '99. 7. 29><개정 '00. 1. 5>

제 호

위 촉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함.

20 년 월 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직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2-1호 서식]<신설 ’19. 6. 12>

서 약 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중 지득한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인)

[별지 제63호 서식]<개정 '00. 1. 5>

○○년 제 회

20 . . .

심 사 안 건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4호 서식]<개정 '00. 9. 28>

민 사 사 건 등 심 사 안 건 목 록

순번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상임위원의견	결정내용
		의 뢰 자	상 대 방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5호 서식]<삭제 '00. 1. 5>

[별지 제66호 서식]<개정 '00. 1. 5>

중 앙 법 률 구 조 심 사 위 원 명 부

순번	소 속	직 위 (직 업)	성 명 (한 자)	위촉일자	해촉일자	해촉사유	비 고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7호 서식]<개정 '00. 1. 5>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회의록

년도 제 회

1. 개최일시 : 20 . . .
2. 개최장소 :
3. 참석인원 : 재 적 명
   참 석 명
   불 참 명
4. 심사결과

순번	사건번호	의 뢰 자	사 건 명	상임위원의견	결정내용	비 고

20 년 월 일

중 앙 법 률 구 조 심 사 위 원 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297㎜(모조지 70g/㎡)

[별지 제68호 서식]<개정 '00. 1. 5><개정 '06. 6. 29>

청 구 서

접 수 자 인	

일금 원(₩)

위 금액을 제 회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 ○명의 수당으로 지급·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성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지출관 귀하

담 당 팀 장	

영 수 증

일금 원(₩)

위 금액을 제 회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위원 ○명의 수당으로 정히·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소속 :

성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지출관 귀하

영수자 확 인	

[별지 제69호 서식]<신설 '18.12.28.><개정 '22. 9. 27.>

■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법률구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대상자 정보)	**법률구조신청**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상소심구조신청 등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거부 가능, 해당항목에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무료대상자 소명 정보 ☐ 송달장소 ☐ 연락처(이메일) ☐ 계좌번호	**법률구조신청사건처리**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체동의	
		일부동의(항목선택)	
		미 동 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법률구조신청 사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사실에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법률구조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출연기관 *	**소송비용상환**	**성명, 사건번호, 대상자, 소송비용**	**5년**	
* 각 대상자에 따른 공단「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지침」제2조에 의한 출연기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법률서면 등 활용 동의**

※ 공단은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사례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소장 등 법률서면과 판결문(결정문)에 대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내부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법률서면 등을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중